

월간 경실련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특집 :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시사포커스
〈2018 국정감사〉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유치원 비리) 판 뒤집을 기회는 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들 이야기
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커버스토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잡힐 것 같지 않은 집값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CONTENTS

동승동 칼럼

10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 수정이 필요해 / 윤순철

30주년을 바라보다

12 경실련이 묻다!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 이성운

특집,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 22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 김성달
- 27 ②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 장성현
- 33 ③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 최승섭
- 38 ④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서순탁

시사포커스

- 43 ① 전문성·전략·전의 상실한 '부실·맹탕 국감' / 김삼수
- 47 ② 판 뒤집을 기회는 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 최예지
- 52 ③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벌은 웃는다 / 권오인
- 56 ④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 남은경
- 59 ⑤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 서희원
- 64 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 조성훈



12 30주년을 바라보다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59 시사포커스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경실련 |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중앙위원회의장 이의경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이성윤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8년 11월 22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지역이야기

68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 조광현

우리들 이야기

72 ① 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 이성윤

77 ② <경실련 29주년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 최윤석

81 ③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 오세형

84 ④ 문화산책 -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 강예진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7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88 경실련 일일보고

92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72

우리들 이야기

회원 인터뷰 배동준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77

우리들 이야기

경실련 29주년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기증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북관계 또한 힘에 의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인들은 영원히 권력을 쥔 것처럼 행세하며 은밀하게 사욕을 채우다 광장의 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대단한 반전이었고 역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임 집권세력의 과오가 너무 컸던 탓에 국민들로부터 후임 집권세력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였고, 외적으로는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과제와 함께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논란에 있거나 우호적 지지층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고용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정책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일자리현황판을 설치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3%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4년 612만 명에서 2018년 661만 명으로,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는 시간제 노동자도 2014년 203만에서 2018년 271만 명으로 5년간 매해 증가하였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정규직을 7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랐으나 기대난망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감소와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존재를 다루고 있고, 노동계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탄력근무제 확대에 대립하고 있다. 몸통은 간데 없고 꼬리를 붙잡고 싸우는 형국이다.

혁신성장은 경제·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성장·소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시스템 개혁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의 숙원이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은행업 진출을 터주거나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세습을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되고, 투자자본 유치 시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영권은 현행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역대 어떤 우파도 감히 못한 가장 친재벌 정책을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앞장서 추진한다며 경제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17개 시·도에서 사업들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받는 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토목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인사또한 신뢰 상실의 연속이다. 현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8명으로 고위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적용은 접어두더라도 협치의 실종이고 국민 정서의 무시이다. 최근 관리형 경제부총리와 비경제전문가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은 현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나 대내외적인 위협을 헤치고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엔 매우 미흡한 인사이다. 남북관계를 제외하면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흔히 “깜깜한 밤하늘에 홀로 찬란히 빛나는 방향타 북극성처럼...”이라는 서정적으로 인용되는 북극성은 3개의 별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지구에서 보면 하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3개의 별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북극성과 같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60개월 중 20개월이 지났고 아직 40개월이 남았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초심을 잃은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일관성 있게 근본에 집중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 묶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터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이성윤 회원팀 간사
pain2c@ccej.or.kr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태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과 어떤 인연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89년에 들어왔는데 이근식 교수가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지분과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의가 가장 유린되고 있던 것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해 말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라는 책도 이근식 교수와

같이 썼습니다. 경실련 초기에 지방조직들이 만들어진 것도 집값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역조직 만들 때, 부동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직접 이야기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95년에는 정책위원장도 했습니다.

Q. 경실련 초창기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이 왜 중요하고 주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제정의에서 핵심은 분배정의예요. 87년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노조 같은 곳은 이전



보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토지를 통한 분배정의는 아주 안 좋았어요.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몇 배의 투기 이득을 얻고,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땅을 사고 할 때였으니까요. 이미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사서 토지가 없는 임차상인이나 영세 제조업자 등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몇 배 오르는 것은 기본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가총액이 막대하게 늘어났어요. 89년 7월에 전국의 지가총액이 1300조 정도인데 그때 1년 GNP(국민총생산)와 비교하면 9배 이상

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지가총액이 GNP의 5~6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더 이상 무시 할 수 없던 노태우 정권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죠. 그래서 그때 그나마 토지공개념이라도 해야 한다고, 경실련 지방조직이 생길 때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관철되지 못했어요. 특히, 보유세 과표현실화가 전혀 관철되지 않아서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Q.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후에 그 법이 위헌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붙이기 전에 대다수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매겨요. 평균적으로 실효세율이 1% 이상 되도록 하는데 그게 기초예요.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경제 정책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토지공개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는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보유세의 현실화, 즉,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공시지가를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보다 비교적 실거래가에 가깝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과세표준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부담금 그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순서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저 이름만 근사하게 붙였어요. 저에게는 노태우 정부가 진실한 정권이 아니었다고 배우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을 한 나라거든요. 그때는 전 인구의 70~80%가 농민이었고, 농업이 주산업이었죠. 거기서 중요한 원칙이 경자유전이거든요. 그런데 8,90년대가 되면 농업 인구가 10%대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도시에 80~90%가 살아요. 그럼 도에서 사는 사람을 위한 부동산 철학이 뭔지, 산업화 이후의 도시 중심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자유전의 원칙이 뭔지 봐야 합니다. 농촌에서 흉년이 들면 50%를 소작료

낸다고 하면 수확량이 30가마에서 20가마로 줄었을 때 소작료가 15가마에서 10가마로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월 3천만 원 매출을 내다가 2천만 원이 됐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가 있듯이 그냥 나가라고 하잖아요. 농촌에서 풍년이 들었다고 소작농을 쫓아내거나 소작료를 더 내지 않잖아요.

우리의 경제구조는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도시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장으로 얻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도시의 무주택자나 임차상인, 농민들은 완전하게 소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꼭 토지공개념을 넣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어요.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해주시길 바랍니다.

A. 지난 7월에 지식인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요구 사항에 보유세, 종부세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정부가 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냈어요. 물론 투기억제대책이라는 방향은 옳아요. 근데 어떻게 7번씩이나 대책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안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9월 중순에 8차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지금까지는 잠잠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 이상이면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을 통해 수백조의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안정 시킬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이 최소한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더 요구 한다면 2013년 말 정도로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라는 것이 쉽게 꺼져야 피해가 없는데 우리나라 거품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100을 해야 되는데 겨우 하나 밖에 못하고 있어요. 1경이 넘는 부동산값에 **실효세율이 1%가 되려면 100조 원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조 원도 안 받고 있잖아요. 10조 받으**

면서 5천억 더 받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안심해서 다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걸 1년 반이나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Q. 부동산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국의 지가총액이 1경 원을 넘습니다. 한국 은행은 5천~6천조라고 하는데 그건 공시지가 같은 것이 과소평가 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부터 해서 평균 실효세율이 1% 정도로 100조 원의 보유세를 걷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임대소득도 철저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원이 있는데 세금을 안 걷는 나라, 정부가 나서서 탈세를 보장해주는 나라는 G7에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두 번째로 전세와 선분양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겁니다. 미국은 20%만 돈이 있으면 80%를 용지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80% 전세보증금이 있는데도 그 집을 못 사잖

아요. 부동산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증거가 바로 전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10대 경제국이다, 올림픽 메달을 몇 개 땀다는 것이 그리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전세가 있다, 아파트를 몇 만채 선분양을 한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나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하는 것은 토지 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하고, 그 땅은 계속 국유지나 공유지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양할 때는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팔 때는 원래 주인인 공기업에 환매하도록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로 싱가포르처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의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기한도 50년, 더 나아가 100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에는 금융이 중요한데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거품이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너무 오래 저금리정책을 했고, 지난 정권 동안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감독업무는 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만 간섭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Q. 부동산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우선은 시민단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 반대하던 은산분리를 훼손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어요. 또 규제를 푸는 게 무조건 좋다면서 규제프리존법도 통과시켰어요.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려다 못했거든요.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시민감시 기능을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적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제정의가 유린 되는 채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수구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촛불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소한의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도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Q. 경실련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도 활동했던 김헌동 단장인데요. 두 분이 같이 책도 쓰셨고, 형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다섯 가족이 단칸방을 1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나중에는 가족이 늘어 8명이 무허가 단칸방에서도 살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학교에 늦게까지 있어야 했죠. 근데 그런 곳에서도 매년 세를 올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세입자의 설움을 잘 알죠.

아우는 사우디 등 여러 중동국가에서 토목공사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럽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접했는데 한국에 와서 공사장 다녀보면 너무 달라서 그런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한테 항상 배웁니다. 특히, 주택공급측면에서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쓴 책은 잘 안 팔리고, 혼자 쓰면 더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배울 수 있는 동생이 있어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제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선해서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뽑지 않은 경제권력에 결국은

포용이 되잖아요.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모든 권력이라 함은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문화권력 등등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이죠.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지,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 1조거든요.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를 넣었다고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민주국가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경제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동 교수가 집필한 책의 제목처럼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현대의 도시사회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철학,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 대책은 삶의 터전을 닦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정부가 제대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뽕때추니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가을비'나 '첫눈'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지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단체 및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제청연달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 추천 (추천인:)
 토론회, 행사 (행사명:)
 인터넷, SNS 기타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input type="checkbox"/> CMS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월납부금액			
개인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법인 (매월)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일시)	<input type="checkbox"/> 60만원	<input type="checkbox"/> 12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회원님의 소중한 회비 덕분에 경실련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경실련은 모든 회비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12월26일까지)

영수증 발급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회원_개인정보 업데이트 홈페이지 로그인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_홈페이지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개인정보 업데이트

우편발송을 원하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치 않으시면
경실련 회원팀 전화 (02-766-5627/8)
이메일 (member@ccej.or.kr)로 연락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seongdal@ccej.or.kr

9.13 대책을 발표한 지 60일이 지났다. 대책 발표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9.13 대책에 대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집값안정을 자신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상승세만 꺾였을 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급매물은 있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들도 여유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오히려 최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4,500만원에 분양했음에도 평균 42대의 청약과열을 빚었고, 8.27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땅값 과열도 우려되는 등 지금의 주택시장은 안정이 아닌 언제든지 상승할 준비태세를 갖춘 걸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근본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서울 아파트값은 언제 올랐고 왜 올랐나?

국민은행이 발표한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천만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17년 2월 6억 원에 비해 1년8개월만에 한 채당 평균 2억5천만원이 상승하여, 서울 아파트 전체(150만채)로는 375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부동산 불평

등은 더욱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왜 상승하는가? 아파트값 변화를 살펴보면 집값상승의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은 경실련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16개 단지의 90년대 이후 아파트값 변화이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규제중심이었던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높게 뮴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크게 변화했던 전후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거나 폐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시점인 94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평당 700만 원정도 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다 2000년 1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이후로는 폭등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 공개가 도입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008년 리먼사태까지 겹치면서 급락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휘청했던 집값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회복되며 2010년에는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등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며 집값은 2014년까지 하락세였다. 집값하락세에 건설업계나 개발관료, 정치인 등은 이명박 정부 내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상한제는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집값이 하락하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야합으로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고, 기다렸다는 듯이 2015년부터 집값도 상승세로 전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집값이 오르는가?

■ 임기내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50조 원을 투입

〈그림1〉 서울 강남4구 대규모 아파트 가격변화 추이



〈표 1〉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대책	주요 내용
도시재생뉴딜 (2017.5)	연간 10조 원, 임기내 50조 원 투입, 열악한 달동네 중심으로 집주인 수리비용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건설사 일감확보 및 일자리 창출
6.19 부동산대책 (2017.6)	서울지역 전매금지, LTV/DTI강화 및 집단대출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2주택 제한 등
8.2 부동산대책 (2017.8)	서울 25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11개구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등
주거복지로드맵 (2017.1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장기공공임대주택 41만호), 공공택지 민간 분양 43만호 공급과 이를 위한 40개 공공택지 개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2017.12)	임대사업자 등록시 지방세, 양도세 등 완화, 등록 의무화는 '20년 이후 단계적 추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 (2018.7)	주변시세 7~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10만호 확대
8.27 부동산대책 (2018.8)	수도권내 30만호 공급위한 30개 공공택지 추가개발, 투기지역 확대 등

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발표 하며 강북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정부는 노후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경실련이 기존에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90%가 토목, 건축사업에 집중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실체는 토건사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리적 환경 개선은 오히려 땅값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경험한 투기세력들이 강북지역 중심의 집값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실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완화

집권 이후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시행 등의 8.2대책을 발표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예고 하며 2018년 4월까지 여유집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도 하기 전인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완화와 건보료 부담인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2018년 1월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확대해주는 지원책까지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 팍푼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세를 지금까지 한번도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던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이에 따른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유도를 빌미삼아 각종 지원책으로 투기만 부추긴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권에 재건축아파트가 거의 분양되지 않았고,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도 대거 미분양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가락시영, 개포 주공, 서초삼호가든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고분양에 나섰고 여기에는 박원순시장의 규제완화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와 5층 저층아파트를 35층까지 허용해주는 층고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긴 것이다. 이로 인해 강남권에 4~5천만 원대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며 주변 집값을 자극했다. 여기에 2018년 6월에는 재건축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여의도 용산 규제완화를 예고하며 해당 지역뿐 아니라 마포 등 인근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억단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집값불안에 박원순 시장은 전면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언하며 개발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이다.

■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사에서 강남4구의 주택거래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다주택자와 29세 미만의 주택거래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집값불안이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거래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적 거래 차단에 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통한 3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었다. 가뜩이나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로 집값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책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고, 개발정보까지 사전 유출되며 후보지 땅값을 자극했다. 지금까지 판교, 마곡, 위례 등의 신도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평당 800만 원대로 공급, 제2의 강남으로 개발하여 강남집값을 잡겠다고던 판교신도시는 입주10년만인 지금 경실련 분석결과 19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LH 등의 공기업, 건설사, 입주자

등에게 돌아간 개발잔치상이었음이 드러났고, 마곡 등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라고 공급했던 10년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3배까지 집값이 상승하며 입주자 부담만 늘리고 LH공사와 건설사에게만 로또를 안길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실패한 판교식 신도시 개발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한다.

■ 9.13 대책에 의한 종부세 짚금 인상

9.13 대책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14억원의 3주택자도 종부세 인상은 5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30평대 강남 아파트값이 4억 원씩 오른 상황에서 종부세 짚금 인상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오히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영터리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집값(땅값+건물값)인 공시가격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재벌이 소유한 업무빌딩 등은 시세반영률이 40% 대에 불과하는 등 지금의 공시가격이 서민보다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유리하여 막대한 세금특혜를 부여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개선을 밝혔지만 여전히 아파트 중심의 공시가격 인상에 머물며 불공평 과세가 예상된다.

③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대책을 시행하라

수많은 미봉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울 뿐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전환에 따른 논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친 집값불안에 대한 원인도 진단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금의 집값이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기 바란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서 분양거품을 차단, 신규분양이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종합과세해야 한다. 부동산부자에 게만 유리한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85%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투기세력들이 정부 대책 눈치를 보며 상승세가 꺾인 지금 시점이야말로 근본대책을 시행하여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집값불안을 방조하고 근본대책 시행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한 정권에게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고 다음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bansug5@ccej.or.kr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40~50%에 머물지만, 서민 아파트는 70~80%를 보인다. 쉽게 말해 100억 원 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0~50억 원, 1억 원짜리 아파트는 7~8천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인해 부자들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서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조세 불평등이자, 세금 특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감정평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선진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시장 가치(market value)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실거래가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가 기초가 되면, 거래가 드문 고가 단독주택은 보수적으로 산정돼 시세반영률이 낮아지고, 거래가 활발한 저가 주택은 데이터가 많으니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국토부(공무원)가 마음만

먹으면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가단독주택이나 상업빌딩의 시세 반영률을 일부러 낮추더라도 국민은 알 수 없다.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부동산 부자가 세금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공무원)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해 조작하더라도, 국민은 일절 알 수 없다. 공시가격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산정되는지, 세금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 엉터리·조작 비판에도 국토부는 묵묵부답

정동영 의원실을 통해 우리나라 단독주택 상위 50위 가격을 받았다.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을 비교해 봤다. 비교 결과,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였다. 순수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았다.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산정가격의 80%로 공시한다는 변명을 내놨다.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해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였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 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 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 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 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 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 7천만 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103억 8천만 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표 1〉 2018년 고가단독주택 집(건물)값 마이너스 상위 10위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정부 발표		차액 (집값)
		땅값+집값 (공시가격)	땅값 (공시지가)	
1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00-0	5,110	6,360	-1,242
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	5,230	6,330	-1,099
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0	10,800	11,830	-1,030
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	4,350	5,270	-912
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	5,590	6,470	-878
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00	4,300	5,150	-849
7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000-0	10,400	11,230	-824
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0	5,710	6,410	-690
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000-00	5,110	5,600	-489
1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00-00	4,280	4,670	-387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 원인 셈이다.

고가주택 대부분은 재벌기업 일가친척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 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 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 원이다. 땅값+집값보다 순수 땅값이 1억 원 더 높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 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E 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 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집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평당 건물가격이 390만 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1월 현재 평당 630만 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 원 대이다. 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표 2〉 2016년 고가주택 집값 마이너스 상위 10위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정부 발표		차액 (집값)
		땅+집 (공시가격)	땅 (공시지가)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0	7,770	10,380	-2,609
2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000	6,250	8,770	-2,515
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00-0	7,640	9,990	-2,346
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0-00	7,250	9,380	-2,122
5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00-0	6,150	8,060	-1,910
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0-00	6,570	8,370	-1,791
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0	6,490	8,130	-1,638
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0-00	10,300	11,900	-1,597
9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000-0	7,750	9,260	-1,503
1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00-0	8,150	9,600	-1,448

〈표 3〉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1)국토부 해명 전 땅값	2)국토부 해명 후 땅값(A)	공시지가 (B)	땅값차액 (A-B)	반영률 (A/B)
1	용산 한남동 000-00	25,180	31,710	22,630	9,080	1.4배
2	용산 이태원동 000-00	20,960	26,840	19,480	7,360	1.4배
3	용산 한남동 000-00	17,770	22,700	17,860	4,840	1.3배
4	용산 한남동 000-00	17,480	22,230	17,920	4,310	1.2배
5	용산 이태원동 000-00	15,830	20,380	15,160	5,220	1.3배
6	용산 한남동 000-0	14,780	19,010	15,480	3,530	1.2배
7	중구 장충동 1가 000	14,450	18,250	14,040	4,210	1.3배
8	용산 이태원동 000-00	14,340	18,020	14,180	3,840	1.3배
9	용산 한남동 000-00	13,780	17,330	14,270	3,060	1.3배
10	강남 삼성동 00-0	12,250	15,730	4,850	10,880	3.2배

주1) 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

주2) 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평당 최고가는 310만원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영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이러한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 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 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 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 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 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 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730만 원 VS. 3,000만 원 고무줄

이번엔 건물(집)값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 80% 적용 전 공시가격(공시가격 x 1.25) 기준으로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유다. 공시가격 169억 원에 시세는 325억 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 원(평당 160만 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 원(평당 700만 원)으로 상승한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 원, 시세는 210억 원이 넘는다. D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집값)보다 높았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집이다. D주택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평당 건물값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750만 원 수준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건물값을 재산출하더라도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500만 원에 불과해 서민아파트 평당 건축비보다 낮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조정비용으로만 수억 원이 들어간다.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이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의 건물값은 각각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건물값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 261억 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 원(평당 2,700만 원)이지만, 국세청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 원(평당 245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관에 따라 부동산

〈표 4〉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1)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		2)국토부 해명 후 건물값 (A)		국세청 건물값 (B)		배율 (A/B)
		총액	평당가 (만원)	총액	평당가 (만원)	총액	평당가 (만원)	
1	용산 한남동 000-00	3,470	920	10,000	2,700	920	245	10.8배
2	용산 이태원동 000-00	4,020	390	9,900	1,000	2,540	245	3.9배
3	용산 한남동 000-00	1,840	230	6,770	900	1,930	245	3.5배
4	용산 한남동 000-00	1,090	180	5,830	900	1,520	245	3.8배
5	용산 이태원동 000-00	3,040	320	7,590	800	2,370	245	3.2배
6	용산 한남동 000-0	1,420	160	5,650	700	2,120	245	2.7배
7	중구 장충동 1가 000	1,160	400	4,960	1,600	740	245	6.6배
8	용산 이태원동 000-00	520	360	4,200	2,900	350	245	11.8배
9	용산 한남동 000-00	-60	-350	3,480	2,000	420	245	8.2배
10	강남 삼성동 00-0	9,050	1340	12,530	1,900	1,650	245	7.6배

주1) 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

주2) 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평당 최고가는 310만원

가격공시제도 기준과 값이 달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땅값)와 공시가격(땅+건물)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세금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지만 2012년 12개로 축소됐다. 12개가 공개되던 민간주택은 아예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보니(민간주택의 경우 불가능)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구자비로 높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주장했고, 지난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계획만 밝힐 뿐 규칙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국회에 법률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관련 법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1년동안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가 언제 될지 모르는 법률개정을 핑계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분양원가 법안을 철회할테니 정부가 즉각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이 규칙 개정을 약속한바 있다. 이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의원은 발의법안을 철회했고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이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약속 이후, 뒤늦게라도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 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져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정 규칙에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표 1〉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예시)

구 분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6,595,392,000		
	기간이자	0		
	그밖의 비용	661,600,848		
	계	67,256,992,848		
건축비	공사비	토목	2,851,416,047	
		건축	52,701,165,034	
		기계설비	10,286,304,077	
		그밖의 공증	13,424,654,565	
		그밖의 공사비	2,963,842,473	
		계	82,227,382,196	
	간접비	설계비	1,171,300,000	
		감리비	3,664,921,600	
		부대비	1,720,341,435	
		계	6,556,563,035	
	그밖의 비용		4,151,221,920	
	합 계		160,192,160,000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서울시 역시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이는 현재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분류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판매)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점에

설계내역과 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존재한다. 분양원가공개와 별도로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도 그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이미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과거 3년,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공사원가 등의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공사비 내역은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감춰서는 안되는 정보임이 이미 소송을 통해 입증된바 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서울시가 공개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설계, 도급, 원청 하청 대비 표 등)을 소송을 통해 받았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분양원가공개만 제대로 되고 분양가 거품 뺄 수 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분양가 거품을 뺄 수 있다. 최근 강남 재건축은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분양으로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필요적 경비	필요적 경비(체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2. 건축비(58)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23)	공동가설공사, 가시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흡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 도급, 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해야 분양가에 속임수는 없는지, 거품은 없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다. 62개 항목공개와 더불어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물론 설계와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설령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경기도가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들도 정부제도만 핑계대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중앙정보보다 더 시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강남 재건축 등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개헌안 제122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고 명시하고 있다. 개헌안의 취지는 현행 헌법에서도 제22조 3항과 제122조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토지공개념이 구현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고 사회적 갈등 소지를 제거하고자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개헌안은 5월 24일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 폐기되었다. 여기에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새 1~2억이 오르기도 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에서 토지공개념이 처음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1978년 9월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였다. 「유한한 국토자원을 전체 국민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공통 기반으로 유효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공복지 우선의 새로운 토지정책의 근본이념」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허재영, 1993: 317). 그 후 토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정책당국이나 언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공



개념은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익을 위한 사소유권 행사의 제한’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1980년대 말에 지가 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을 경험한 바 있다. 세간에서는 이때의 토지공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토지공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은 먼저 토지라는 재화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용도의 다양성, 공급의 고정성, 영속성, 토지가치의 공공성, 비이동성과 이질성은 지가급등과 토지투기, 난개발, 토지소유의 편중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토지사유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의미한다.

또한 토지공개념의 불가피성은 우리나라 토지소유권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토지소유권 관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세계 각국의 토지제도를 시찰한 후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제도를 채택했다. 즉, 대륙법계통의 토지소유권 관념인 절대적 소유권제도를 채택했다. 토지소유권을 구성하는 하위권능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리가 가능한 영미법계통의 상대적 소유권관념과 구별된다. 절대적 소유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좁은 국토에 살면서 형성된 사회규범과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공동체 이익 우선의 사고가 정착되어 이용중심의 토지관이 정립되었다. 반면, 일본과 우리는 소유 우선의 토지관이 정착되어 국토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은 협소한 국토 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미국식의 사권 우선의 토지관과 건축자유 원칙을 채택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도 토지공개념을 강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높은 인구 밀도와 빠른 도시화를 경험한 나라이다. 산지와 농지 그리고 보전용 토지를 제외한 1만5천km²

정도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것도 대도시에 대부분 몰려 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토지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구매력이 향상되다 보니 지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구조다.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적 거래로 인해 반복적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미시적인 수요-공급 논리로 보아도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지가상승과 저금리 기조, 기대지가의 실현, 고가주택의 출현 등은 지가급등을 가져오는 주범이다. 토지는 가격이 하락할 때는 구매심리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때 거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여기에 저금리로 안전 자산으로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보태지고





부동산을 사두면 돈이 된다는 사회심리적 요인까지 더해 수요가 부풀려진다. 반면에 공급 측면을 보면, 도시형사회로 진입과 고지가로 인해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화가 끝난 지금과 상황에서는 기성시가지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지가상승률을 높여 지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의 효율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심에서의 토지공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공급을 늘지 않으니 조금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급등과 같은 토지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정책은 어떠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대책은 투기억제와 공급 확대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가급등과 토지투기가 반복되었다. 1960년대 이래 1980년대까지는 10년 주기로 지가가 급등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가상승률은 한자리수로 낮아졌지만 연간 상승가액으로 따지면 역대를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소이다. 바로 토지공개념의 강화에 답이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는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수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나 계획과 세제의 정책효과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거품 붕괴로 힘들어하던 1990년대 초반의 일본문헌에서 자주 등장한다. 지가급등기에 선(先) 규제(계획) - 후(後) 세제시스템으로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근본적인 상찰과 동시에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규제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세제가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도시화 이후 단계에서는 토지세제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도시계획과 규제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장이다. 대도시 토지이용 방향의 재설정과 토지세제의 역할 확대를 들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거주형태와 이주에 이해를 토대로 도심 용적률 완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 전략(예: 복합용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토지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또는 계획)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유인책이라 할 수 있는 세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先) 규제(계획) - 후(後)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문제는 부동산세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다. 세제의 방향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는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때다. 우리사회에서 보유세 중심의 토지세제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의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있었고, 2000년대 중반의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보유세 단계적 인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 21% 수준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재산세제를 개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약화되었고, 재산세율은 60%에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고질적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 주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단순하게 따라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일정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공급 촉진효과를 의미한다.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을 압박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혼합은 정치논리와 진영싸움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



전문성 · 전략 · 전의 상실한 ‘부실 · 맹탕 국감’

– 상시국감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2018년 국정감사(국감)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 ·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2018 국정감사, 전문성 · 전략 · 전의 상실한 ‘부실 국감’

국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의 준비부족은 일견 예상됐으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들도 중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 민생국감’으로 정부가 개혁에 제대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 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보여주기식 ‘한방주의’, ‘정치공방’에 치우친 ‘정쟁 국감’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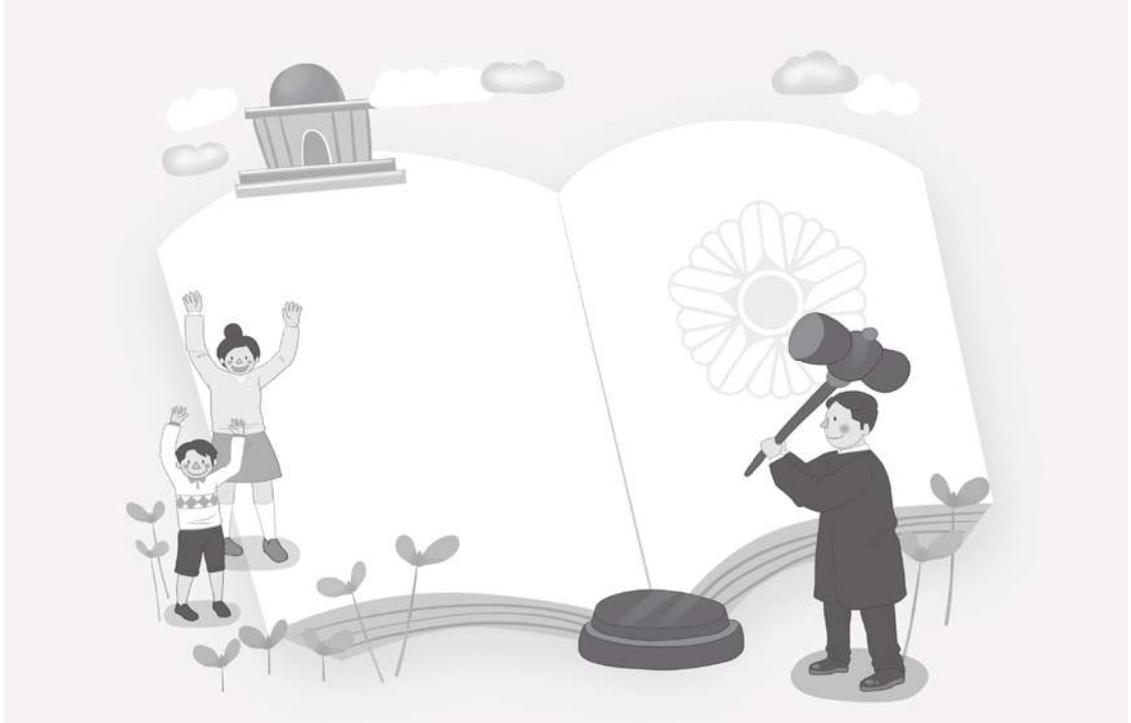
짚어내지 못했고,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다. 일부 야당은 존재감 자체도 드러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태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다.

2018년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국감 정책자료는 총 5,063개다. 이는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145개에 비해 1,100여개 줄어든 수치다. 보도자료를 보내 온 의원들이 2017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음에도 정책자료는 약 18% 감소했다.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국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을 불러올 뿐이다.

하루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도 부실국감을 부추기고 있다. 일례로 국방위는 첫날 32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했고, 과기위는 이틀에 걸쳐 각 26곳씩 총 52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했는데 형식적이고, 수박겉핥기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미미한 사례 중심의 일회성 질문이나 지적 등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생산적인 국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피감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는 현 국감시스템의 한계는 명확하다. 정책 환경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적 요구도 세분화되면서 행정 역시 이를 반영해 전문화, 복잡화, 고도화되는 상황이지만, 의원들의 의제설정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다시 등장한 ‘국감 무용론’...상시국감 도입 절실해져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정쟁국감’·‘퇴행국감’·‘부실국감’ 등으로 ‘국감무용론’은 해마다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정감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원별로 켈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

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상하반기에 분리해서 국감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바 있다. 작년에도 국감을 나눠서 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국회의원 자신들도 국감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있다.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상임위원 제외)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은평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3선, 경기 고양시갑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강북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재선, 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3선, 서울 강동구를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	민주평화당	초선, 전북 김제시부안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4선, 전북 전주시병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없음

것은 옳지 않다. 수시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피감기관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전반을 감사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 상시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 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 맹탕 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8명

2018년 국감이 '부실 · 맹탕 국감'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의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경실련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박용진 의원, 유민봉 의원 외에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4개 상임위 8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판 뒤집을 기회는 왔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 늦어질수록 힘들어진다 —

최예지 사회정책팀 팀장
cyj@ccej.or.kr



[출처: 교육부]

유치원 원복과 체육복 명목으로 수 십만 원의 돈을 냈지만 질 낮은 옷을 받아온 경험, 방과 후 특별 활동비로 몇만 원씩 내는데 아이가 받는 교육은 부실하다는 생각, 체험활동 간다면서 회비 몇만 원씩 내라는데 입장료는 5천 원 정도고 도시락도 따로

준비해야 했던 경험. 유치원 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은 가족이 원감, 행정실장 등의 직함을 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선생님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 무언가 잘못 돼가고 있다고 느끼며 불편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던 유치원의 모습이었다.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므로 학부모들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맡겼다.

우리의 의심은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확신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분노는 거셌다. 거센 분노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회계 시스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끌어냈다. 더불어 현행법에서 허술한 부분도 개선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손 놓고 방치하던 교육당국이 문제를 키웠다

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몇몇 유치원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잘못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문제를 키웠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1년에 약 2조원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별도로 교사 처우개선비, 급식지원비,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총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된다. 그런데도 회계시스템 도입은 유치원 원장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주저주저 했다. 정기적 감사는 없었고, 감사에 걸렸어도 그때만 잠깐이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셈이었다.



이번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없었으면 회계 시스템은 도입은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공공유치원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단계적 시행은 조금 물음표가 붙는다. 무엇보다 이번 비리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전수조사를 기대했지만 교육당국은 끝까지 외면했다. 앞으로의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해졌다.

허술한 현행법, 일명 '박용진 3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치원의 입법 로비, 지역구 의원 협박 등 갖가지 권모술수가 보도됐다. 그런 세력 때문인지 현행법에서도 유치원 관리는 허술했다. 국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명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박용진 3법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를 갖고 최소한의 관리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유총의 반발은 거세다. 의견서를 통해서





박용진 3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 법안까지 발의한 후 논의하자며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 조차 못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논의조차 못하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교육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회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지체할수록 암초만 더욱 늘어날 뿐이다.

결국 믿을 곳은 정부뿐, 공공성 강화 대책 흔들리지 마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과 박용진 3법이 발의되자 유치원 반발은 거셌다. 특히,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다. 상갓집 복장으로 수천 명이 한곳에 모여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폐업한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원아 모집 중단을 선언한 유치원들이 속속 발생했다. 통학버스 문제, 늦은 등교 시간 이른 하교 시간으로 맞벌이 부부는 못 보낸다 등 국공립 유치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사



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사소한 제도의 문제점들은 개선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여기서 주저하고 타협하는 순간 아이들의 교육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럴수록 정부는 단호하게 밀고 가야 한다. 모든 비리는 엄벌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 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유치원은 매입형으로 공공유치원으로 전환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겠지만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결국은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으로 각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공교육화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결국은 교육부의 관리시스템을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의 거센 반발을 뚫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육아 정책 뜯어고칠 절호의 찬스

유치원 문제는 그동안 거센 반발과 정치적 영향력이 두려워서 보고도 외면했다. 지금 정부가 공공성 대책까지 나오기까진 국민의 공분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국민의 공분과 지지를 방패 삼아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에 맞는 처분, 국공립 기관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는 유치원만 문제가 되었지만, 어린이집도 비슷한 실정일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육아 정책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유치원은 유아교육이라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육이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도록 분리되어있다. 나뉘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몇 세까지는 보육 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몇 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방식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소득의 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연결되는 교육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누구나 균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육 문제를 가정과 개인에게만 떠넘긴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육아 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걱정 없어야 한다. 유치원이 쏘아 올린 비리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하루 앞당겨졌다고 믿고 싶다. ☺☺☺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벌은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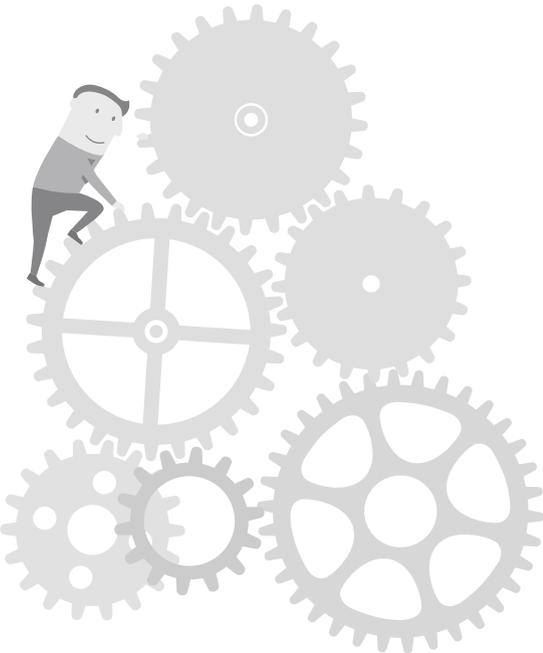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차등의결권은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결권의 차등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를 약화시키고, 사익편취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황제 경영과 경영권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이어서 도입된다면 악용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입에서 도입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한 재벌과 전경련의 숙원사업

차등의결권은 그간 전경련과 재벌들이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 함께 끊임없이 도입 주장을 해오며,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한다. 우선 '5% Rule'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지분이 5%가 넘으면 금융감독당국에 대량보유 신고를 통해 보유상황과 목적을 미리 밝혀야 하며, 이후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지분의 추가취득이 제한되어, 이 자체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제도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백기사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도 있다.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활용하여 방어하기도 한다. 결국 경영권 방어는 핑계에 불과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주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우리 상법과도 배치된다.

벤처기업은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들에게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0일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해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창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지금도 존재한다. 즉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핵심적 내용은 뒤로 숨기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부여는 재벌그룹의 새로운 경영권 세습 모델이 될 것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벤처사업가가 될 수 있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이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그룹 후계 경영인들은 벤처사업가로 변신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크게 키운 다음에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그룹전체를 세습할 수가 있다. 아울러 차별화된

의결권을 활용하여, 재벌 총수일가는 벤처기업에서도 황제경영을 펼쳐나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법제는 지주회사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일부 계열사들로만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지주회사 밖의 계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도 유지되고 있고,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산업자본)가 혼재해 있는 금산 복합구조이다. 따라서 재벌그룹 후계자들이 벤처기업을 통해 그룹의 핵심 지주격인 회사를 지배한다면, 세습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도 등장할 수가 있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활용되기 좋은 허점투성이의 기업집단 체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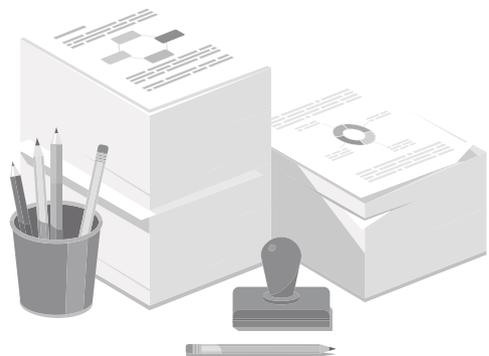
해외 추세는?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 확산 추세라는 점을 언급한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오히려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폐지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연기금 캘퍼스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유지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원칙도 고려한 바가 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우 기관투자자 연합인(CCGG)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재판소는 2002년부터 차등의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황금주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홍콩의 경우, 뉴욕이나 런던 증권거래소와 경쟁하고 있어, 알리바바와 샤오미가 거래소를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허용했다. 결국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성장,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해야

정부와 여당은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외치면서 핵심적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등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없다. 재벌들은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돈이 되는 것은 내부 거래를 통해 다 가져가고 있고,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성공한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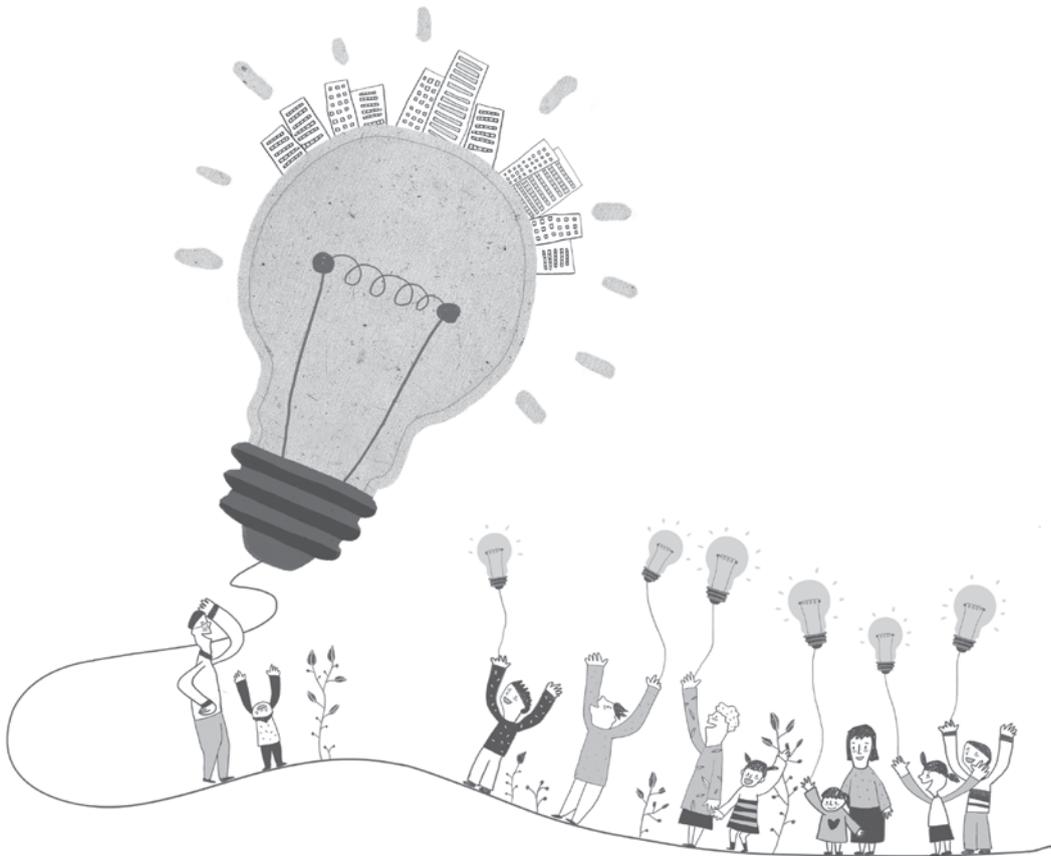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완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경제 정책은 실종된 모양새이다. 진정 혁신성장을 한다면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가 판을 치지 못하게 징벌 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부터 도입하여,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훼손 다음 작품으로 밀어 붙일 경우, 친재벌정권과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재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민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다. ☺☺☺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 개정 이후 입법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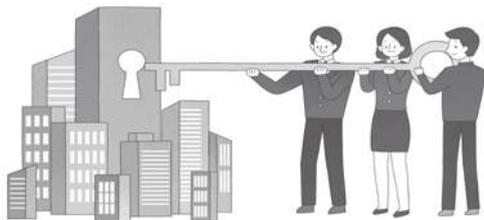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정부는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을 공포했다.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법 개정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개정되었지만 국회 처리과정은 정책논의는 생략된 채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잡고 밀실야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7월 초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던 상가

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이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법이 몇 차례 개정됐지만 보상을 위한 규정에 국한되어 한계로 지적됐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과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 등은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약 중인 상인들에게 계약갱신요구기간의 소급적용이 제외되어 계약갱신에 임박한 상인에게는 부담을 더 키우게 되었고, 이번 법개정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지급과 우선 입주권 보장 등은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개정법 적용 차별 문제 : 계약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기간 소급적용 배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까지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의 적용을 받으며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법에서 정한 거절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개정 논의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 10년 이상을 제시했고 이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 3-5년차인 임차상인들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번 상가법개정으로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보다는 종료한 후 신규계약으로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은 계약연장이 어렵거나 임대료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종 법사위 논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는 계약갱신요구기간의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원내 대표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일부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자 상가법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추가 입법 과제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 시 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은 이번 법개정 논의에서 빠져 있어 조속히 추가 입법 논의되어야 한다. 각종 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시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상가법 개정의 핵심사항이다. 막대한 시설투자비 등을 들여 입점했지만, 다른 법령(재개발·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으로 철거·재건축 시 영업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인들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 향후 상가법 개정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효성 없고, 근거 기준도 불분명한 환산보증금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법 적용을 받는 상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대규모 상가를 제외하고 영세상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상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기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효성도 근거기준도 불충분한 환산보증금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상가법개정은 성과도 있었으나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 보상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고 노력을 보상받을 수 없다.

국회는 여기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추가입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포함 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 ☺☺☺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서회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88@ccej.or.kr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국회 앞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고위공직자 비리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 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철저히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 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 내역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

이후 문민정권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집권 4년 차에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19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 사개특위는 2018년 11월 1일, 첫 전체 회의를 가졌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도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분노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며, “이게 나라냐”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 함께 촛불을 들었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 오래된 공수처 설치 논의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1987년 6월 항쟁 당시, 한국 사회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데에 집중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까지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다. 그 무거운 과제는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에 주어졌다. 1996년 이래 경실련(1989년에 발족), 참여연대

(1994년 발족)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줄곧 주장해왔다.

1996년,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처음으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통해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입법청원 안에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 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러한 시민사회 내 요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 고위 정치인 및 재벌,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이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도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 위원회로 확대되었다. 또 2002년 대선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과 같은 재벌과 노무현 및 이회창 선거캠프 사이의 부정적 거래도 드러났다. 또,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공수처 설치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지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부패방지위원회를 승계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부패방지 업무가 축소되어 버렸다. 또,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 혐의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은 혐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로 끝이 나 버렸다.

핵심은 빠진 ‘개혁’이 어찌면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부패를 낳아왔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처음의 주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6년 이미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현재 부패방지법은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 사개특위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했다. 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사개특위는 오래된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¹⁾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앞에서 말했듯,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공수처 설치의 진보의 키워드도, 보수의 키워드도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

1)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노회찬 의원 등 11인안(2016년 07월 21일 제안), 박범계-이용주 의원 등(2016년 08월 08일 제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안(2016년 12월 14일 제안), 오신환 의원 등 10인안(2017년 10월 31일 제안) 등이 제안된 상태이다.



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80%가 넘는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 10월 한달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법조 비리,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등과의 사투가 벌어졌다. 이 비리와의 사투를 지켜보며, 다시 1996년도의 경실련 부패방지 캠페인의 슬로건을 상기하게 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한국 사회의 부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으며, 부패 가능

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지혜. -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원칙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있다는 순리. 민주화에 매듭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만큼은 꼭, 올해에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올해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 회담까지 잇따라 성사되며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남북 관계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에 이를 것 같아도 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의 위협에 내몰렸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정부 주도 통일 논의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과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감한 대북정책의 시행,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조, 남남갈등을 해소를 위한 통일협약의 체결, 통일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자문단에 포함된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도 의견 제시를 위한 발언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수준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이후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모든 대북정책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최근 10.4 선언 11주년을 위한 방북 행사에서도 충돌이 있었으며, 남북 민화협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행사에서도 통일부가 참가자 선정에 개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나머지 역할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 해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다.



또한 지난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보내졌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며, 야당은 막무가내식의 반대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며 과감한 대북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단행된 지도 8년이 넘은 5.24조치가 있다. 5.24조치는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천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북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제재가 도리어 우리 발등을 찌는 꼴이 되었다. 현재 5.24조치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의 선언적 의미를 담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속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도 재개해야 하며, 경협 사업 재개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이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의 주체·내용 등이 다양화·복잡화 되는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 경협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 설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반공시대이나 적합할 통일 교육은 속히 변화된 남북 관계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특히나 통일 교육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일협약 논의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수·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대화 틀을

통해 차분히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를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국에서 주장하는 CVID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CVID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과감한 대북정책, 국제 사회의 설득 등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하며, 복원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관계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10월 16일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업무추진비 조례)'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구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후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권고한 후 5년여 만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도 전국 광역의회 중 10번째로 제정한 것이라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다.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조례(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조례(규칙)를 제정한 시기는 대체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권고한 2013년 이후이다. 지방의회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이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내·외부 감시 의무화 등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재 강화 등이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업무추진비 조례일 정도로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는 늦은 편이다.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최초로 누리집에 공표한 곳은 대구시의회로, 대구시의회는 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 중에는 북구의회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누리집에 공개한 의회는 한 곳도 없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표하는 지방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규칙) 제정과 정보공개도 늦었지만 이에 대한 시민운동의 요구도 늦었다.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가 3년간이나 지속된 것이다. 대구와 같이 특정정당이 오랜 기간동안 지방정치를 독점해온 지역에서는 지방정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은 기초의회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데다 구성 자체도 허약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도 현저하게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를 상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칫하면 지방의회 무용론, 폐지론에 힘을 보태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재미도 보람도 찾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운동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할리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규칙)의 제정과 집행내역 공표는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반드시 제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억지로 제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위법·

부당한 사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을 적용하면 제어할 수 있고, 사용내역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용내역을 확보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위법, 부당한 사용을 가려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3년 만에 다시 대구 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 주목한 이유는 정치지형의 변화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오랜기간 독점해 왔던 대구지역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경남·울산지역에 비해서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지역에서도 자유



한국당에 대한 응징투표가 있었다. 대구시장과 무소속인 달성군수를 제외한 구청장을 모두 자유한국당이 석권했지만 대부분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대구시의회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으로 당선자 수는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비록 5명에 불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단 1명뿐이던 제7대 대구시의회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 사상 최초로 비자유한국당계열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다. 지역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에도 ‘양당정치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기초의회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의 정당별 분포는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5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자유한국당의 독점구조가 깨졌다. 수성구의회처럼 자유한국당이 소수파가 된 기초의회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후보를 공천했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석수가 역전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실련이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과 집행내역 공개에 주목한 이유는 업무추진비는 해외연수, 지방의원 비리와 자정능력 부재 등과 함께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쟁관계에 돌입한 지방의회가 문제제기를 하기만 하면 곧바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대구경실련은 나름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은 7월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제7대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공개로 시작하였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만 공개한 것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중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이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였는데 이를 인터넷 매체인 뉴스민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파문과 맞물리면서 업무추진비 조례(규칙)를 제정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각 지방의회별로 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현 지방의회의 7월 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의회가 7월 한 달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5.3%,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93.4%를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의 식대로 사용한 것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의 실상을 지역사회에 알렸다. 그리고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사용내역을 공표할 때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지속적 공개와 의회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게재 등의 후속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누리집의 시민참여 게시판에 대한 접근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 시민참여가 민망할 정도로 저조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서구의회는 일부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다른 기초의회들도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경상북도 지역 지방의회에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표 현황을 조사해서 공개하였다. 그리고 현 지방의회의 7월 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힌대로 대구시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8월 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그대로 공개하였다.

대구시의회가 제정한 업무추진비 조례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에 권고한 표준안의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조례의 적용대상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포함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구시의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례(규칙)을 제정한 지방의회 대부분이 저지른 꼼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은 대구지역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대구시의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북구의회, 달서구의회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제7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만 하면 대구시의회, 구·군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모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은 많은 역량을 투입한 활동은 아니다. 사회적 파장과 대구시의회 등의 조례 제정이라는 성과 등을 고려하면 투입에 비해 산출이 훨씬 큰 활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당독점 체제의 해체, 이완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는 매우 거친 방식의 활동이기도 했다. 이미 8대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이들에게는 시간낭비에 불과한 활동일 수도 있다. ☹☹☹



[회원인터뷰]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pain2c@ccej.or.kr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났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99%이상이 기관이고, 개인은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반반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은 상승요인에만 투자를 할 수 있을 뿐 하락요인에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악재가 발생한 기업이나 업종이 अच्छ은 기업에 매도를 쳐서 수익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공평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운영의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매년 10여건인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수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계좌에 주식잔고가 없어도 차입을 했다는 말만 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차입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증권사에 있는데 증권사로서는 차입을 했냐고 따지고 들기가 곤란한 입장이라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금감원이 감시를 해야 하고 적발되면 금융위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기관이나 처분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불법공매도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 직접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경실련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실련과 함께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주식 투자를 17년 이상 해왔는데 저도 공매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에서 공매도로 고생을 하면서 이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주 불공평하고 허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던 몇분과 공매도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사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공신력있는 시민사회운동 단체와 손을 잡고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Q.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희망나눔연대 그리고 300여분의 개인투자자들과 힘을 합쳐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회방문, 청와대청원, 성명서 발표, 언론 홍보 및 출연, 가두유세, 여론 조사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차 목표로 정했던 국민연금의 대차금지는 지난 10월 23일 국민연금의 국감에서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주식대여를 중단하고 대여주식을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아직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서 100%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Q. 1차 목표로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A 국민연금의 대차금지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대차한 주식은 결국 공매도활성화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과거보다 그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초창기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의 젖줄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주식대여시장에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민연금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공매도 상위 1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서 작년엔 6,425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니다. 이들 14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60조 7천억이며 배당은 6조 7천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투자자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배당을 늘리게 함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기업들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 진다면 국민연금 또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의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일단,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새로운 공매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공매도도 기관들과 유사한 정도로 편리성,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난 몇 년간, 최소한 2017년 이후 일어난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불법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매도 제도의 중지가 어렵다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차입공매도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일입니다. 금융위의 방안처럼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놔두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공매도는 위탁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후에 주문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공매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대차시 용도를 신고하는 것, 5% 이상 대주주는 주식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한 주식대여 잔고가 있을 시에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주식 시장에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기관도 장치도 하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기관을 위한



기관일 뿐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보입니다. 금융선진화를 외치면서 도입하는 제도나 기법은 모두 다 기관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이 자리잡은 선진국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개인투자

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익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수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정의라고 말하는 배동준 대표.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개인만 계속해서 희생당한다면 이 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부가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적용할 때, 경제정의를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최윤석 기획교육팀 간사
bohemian37@ccej.or.kr



경실련은 1989년 11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29돌을 맞은 경실련의 창립을 기념하는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미화 공동대표님이 경실련 가족들을 대표하여 초청 인사를, 목영주 공동대표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후원의 밤’ 행사는 시민단체, 노조,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사교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창립기념식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셔서 경실련 창립 29주년을 기념해주었

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여 내외빈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님, 접수를 맡은 활동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식은땀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도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경실련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섰던 활동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한 해 경실련은 시민주도의 헌법 개정,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보유세 강화,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글로벌 ICT기업 정상과세, GMO표시 제 개선 청원 등지내몰림 방지 및 상가법 개정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원의 밤' 행사의 백미,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인권단체 '반올림'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기업 삼성전자와 맞서며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상은 권영준 공동대표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식에서 경실련은 2018년을 희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움트던 올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방향, 속도 등을 보며 여전히 경실련의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느낍니다. 남은 2018년, 다가올 2019년에도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다짐 해봅니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경실련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전합니다.



경실련 창립 2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o@ccej.or.kr



[사진출처 : 전쟁없는 세상]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그룹 넥스트의 신해철이 부른 ‘힘겨워 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이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곡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속에서 문제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민법에 존재하던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하였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제도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과 개인의 존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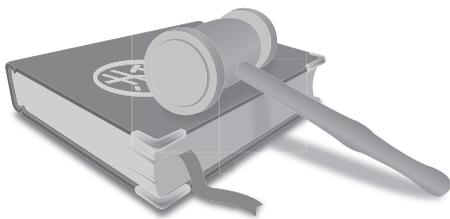
양심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회의 부조리한 법제도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기본적 믿음이 지켜진 것이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개인적 양심이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병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현역입영 거부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요구권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토론과 함께 이슈화되었다. 마침내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뒤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특수한 관계 등이 우선시되면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하고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쉽게 인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해 온 또 하나의 부조리가 개선된 예이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양심에 따른 사유를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로써 다양성, 인권, 양심 등의 내용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또 크든 작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방의무를 병역의무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청년들도 당연히 기뻐해야 할 변화이다.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청년들도 대부분 적절한 대체복무형태가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소통과 대화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세상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가지만, 한 순간이라도 한눈을 파는 순간 시대는 역행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원만한 해결이 성사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과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전태일 선생의 근로기준법 외침과 노동과 산업재해에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눈뜨게 된 원진레이온 사건 등의 의미를 늘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그토록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진보·보수 이전에 대한민국이 가야할 지향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꼭 필요한 원칙들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더라하는 영화 속 대사가 있다. 그 당연한 말이 공허한 울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통일한국, 반제국주의, 반독재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격차사회 해소, 복지국가,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함께 서로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 공동체 등등 이야기 해보자. 충분한 논의 설득 공감을 통해 합의된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강예진 경실련 인턴



벌써 울긋불긋했던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간다. 인턴 생활을 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던 나날들 속에 시간은 빠르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지나칠 순 없다는 생각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반겨 주는 겨례의 탑, 겨례의 집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가 가득한 태극기 한마당은 어린 시절 이맘때면 출전했던 미술대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 주변으로는 붉고 노란색이 가득한 나뭇잎들이 독립

기념관을 더욱 장엄하게 메꿔주는 듯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에서의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한말의 국권수호운동과 3·1운동'이라는 제목의 야외 사진전을 발견하였다. 사진과 함께 부연된 설명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진들을 따라걸으며 3.1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그중 하나가 일제의 식민통치다. 일본은 주권을 빼앗은 것 뿐만 아니라, 회사령·신문법·학교령과 같은 법령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하였고,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거대 공동체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뉘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을 조직하고 계획하였던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만이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3.1 운동에서도 큰 활약을 보였다.

3.1 운동을 통해 나타난 사회지도층의 인식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은 근대적인 단계로 발을 들이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현대사회는 본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며 발전해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같은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시민의 확대도 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확대는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었다. 시류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했다. 일제에 침략당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 한 말을 현재 우리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전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이 그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시민단체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것이 보람차게 느껴졌다. 사회의 문제를 현실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의미있게 다가온다. 내년 이 계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사무실의 고양이도 여느 때처럼 햇빛을 잘 쬐고 있을까 이런저런 상상 속에 글을 마무리 해본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지난 10년간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5.9% 줄었지만,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80.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 대기업들이 독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부동산 불평등에 많은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비율이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명이 3,756채, 상위 100명으로 넓히면 14,663채였습니다. 집이 넘쳐나는데 내 집은 없는 슬픈 현실에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셨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합당한 세금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 사립 유치원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이메일 news@ccej.or.kr

f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 전화번호 02-766-5627~5628

Homepage



Twitter



Facebook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8. 09.

09.17

- [자료분석] 경기도시공사 4개 단지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 원 비싸
-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물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기자회견]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09.18

- [의견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성명]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09.19

- [성명]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자료분석] 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업무연계는 해결책이 아니다
-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성명] 「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09.20

- [성명]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성명]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 [자료분석] 서울시가 직접 하면 강남의료원 부지 개발로 3.7조 이익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09.21

- 성명]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라
- [성명]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성명]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 09.21 •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거부권 행사하라!
- [성명]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09.28 • [토론회]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2018. 10.

- 10.02 • [성명] 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성명]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공동기자회견



- 10.04 • [의견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땀질'식 방안

- 10.05 • [성명]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성명]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으로는 부족하다

- 10.08 • [자료분석]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10.09 • [보도자료]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10.10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10.11 • [성명]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 [기자회견]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 [성명]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10.11 ·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 [성명]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 [자료분석]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대기업 건설사가 독차지



- 10.12 · [성명]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10.15 · [자료분석] 다주택자 최상위 1위~100위 주택보유 현황 공개
- [성명]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기자회견]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10.16 · [성명]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 [성명]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10.17 · [자료분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자료분석] 상위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 원 증가
-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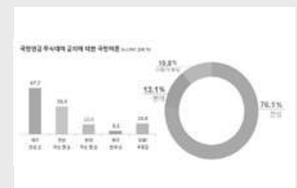
- 10.18 · [자료분석] 국토부와 국세청 건물가격 평균 8억(58%), 최대 74억 차이
- [성명]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가 답이다

- 10.19 · [성명] 공수처 설치에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 [성명] 어렵게 구성된 정개특위,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임하라

- 10.22 · [자료분석]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 9조원 상승



- 10.23 · [여론조사] 국회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 [자료분석]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성명] 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성명]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 10.24 · [성명]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 10.25 · [성명]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 10.30 · [성명]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보도자료] 2018년 국감 '부실·맹탕 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8명



- 10.31 · [기자회견]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 [토론회]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의 면담



2018. 11.

- 11.01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서명 모아 청와대 면담요청서 전달
- 11.02 · [성명]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해야
· [성명]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성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11.07 · [성명]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성명] 분양원가 61개 항목 머물지 말고, 세부 자료 공개하라!
- 11.08 · [성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 [성명]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11.09 · [성명]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 [성명]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87명, 가입일 2018년 9월 15일~2018년 11월 12일)

강승규	김수용	김정완	박성아	서지훈	심준옥	유영진	이윤석	정미순	최복희	금융정의연대
곽보경	김연순	김진	박승대	소재두	안병선	유재영	이정수	정미영	최선에	법무법인 케이앤에이앤에프
권재구	김영근	김태호	박영옥	손현주	안필규	육순일	이정호	정상옥	최웅환	법무법인 한누리
권종숙	김영남	김학수	박은정	송계주	안희상	윤여진	이주홍	정용우	최진우	(사)한국YWCA연합회
김경완	김영선	김현	박종익	송기호	양문수	윤영돈	이주희	정우성	한동범	(사)한국여성민우회
김경철	김영택	김현수	박중호	송미애	양미경	이계영	이현선	정지연	한동환	(사)한국여성정의전화
김기덕	김영호	김혜숙	박지영	송미옥	양복심	이계인	이현호	정지운	한소리	생태지평연구소
김기태	김용건	김환식	박찬호	송백곤	양석희	이근영	이혜린	정지웅	한송동	세리경작 디자인
김대웅	김용상	김희라	박현식	송석만	양승의	이명자	이혜진	정해옥	한원중	소비자와 함께
김대환	김용필	노상래	박형중	송석암	양진영	이상정	이화순	정화석	함창모	이안세무법인
김동억	김우영	문정원	방호운	송영주	양진우	이석형	임지연	정희숙	허창원	전국가맹장주협의회
김모드	김유경	문혜령	백미순	신대식	양효진	이선자	장영열	진상화	허창재	전국간선실노동조합
김민철	김윤식	박래수	백병성	신상문	여진	이선희	장재훈	최가일	홍서희	전국농민총연맹
김복연	김은숙	박보정	백순자	신예진	오병일	이성균	장진희	최경천	홍원선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서진	김은재	박상도	백영대	신재현	오세봉	이성미	장춘식	최덕현	황상하	환경운동연합
김석준	김인성	박선아	백용구	신화정	우예현	이승준	전대길	최병우	황은아	희망나눔주주연대
김성민	김정일	박선오	변판섭	심숙희	유미정	이용재	전필기	최병홍	금융소비자연맹	
김성희										

중앙경리원

강덕순	강영구	강민구	강병철	강선미	강영권	강은현	강일환	강정화	강주현	강지영	강창걸	강창구	강창균	강철	강철규	강철승	강태철	강현신			
김해정	김민수	계충미	고강석	고경일	고경호	고성순	고영일	고영희	고읍	고은주	고은진	고지석	고지숙	공병욱	공양석	공정표	공진하	곽기훈	곽새별	곽의영	곽지웅
곽희석	곽희남	구경이	구성찬	구수정	구은경	구자범	구찬희	권경우	권기대	권기범	권동현	권득용	권만열	권봉철	권상현	권순남	권순식	권순용	권순탁	권순호	권영준
권영진	권오진	권용습	권용우	권용희	권윤정	권일민	권준기	권준석	권준우	권찬	권철민	권혁근	권혁민	김갑수	김건호	김경모	김경배	김경수	김경수	김경아	김경준
김경철	김경호	김경환	김관영	김관용	김광배	김광수	김광현	김광훈	김국주	김규범	김규영	김규흔	김근성	김근수	김근철	김근초	김금숙	김금태	김기숙	김기열	김기태
김기태	김기환	김길락	김남덕	김남훈	김대균	김대선	김대성	김대중	김대진	김대현	김대호	김동억	김동영	김동울	김동훈	김래관	김만기	김만수	김명균	김명임	김명철
김명환	김무준	김문환	김미진	김민수	김민정	김민주	김병각	김병구	김병수	김병수	김병수	김병재	김병주	김병주	김병학	김병호	김보경	김보라미	김복환	김사길	김상겸
김상균	김상영	김상우	김상희	김생수	김서진	김서현	김석환	김선민	김선욱	김선필	김선희	김성균	김성달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일	김성중	김성철	김성태	김성필
김세준	김세진	김소라	김송식	김수영	김수희	김순득	김순복	김승보	김승우	김승하	김승현	김시연	김시원	김양규	김양수	김양진	김연규	김영미	김영선	김영섭	김영순
김영실	김영은	김영재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철	김영철 (일허스님)	김영철	김예은	김오열	김원래	김원배	김원욱	김용건	김용남	김용섭	김용속	김용술	김용식	김용철	김용하
김우비	김우영	김우영	김원석	김원태	김유룡	김유찬	김윤기	김윤두	김윤석	김윤선	김윤선	김윤	김은경	김은경	김은섭	김은영	김인곤	김인봉	김인숙	김인영	김인철



김민태	김진아	김형조	류형욱	박삼중	박용준	박한웅	서지원	신동애	양두석	유남식	윤현식	이봉훈	이용배
김일수	김진현	김형준	류화근	박상희	박우석	박행우	서한송이	신동엽	양문수	유덕열	윤효상	이상열	이용선
김재구	김진화	김형진	마경화	박상대	박원규	박현진	석기영	신동조	양석영	유동진	음유정	이상룡	이용승
김재구	김진호	김형표	마미영	박상렬	박원석	박형근	석철수	신동진	양성범	유동호	이갑수	이상범	이용재
김재길	김찬동	김혜경	맹경숙	박상성	박윤수	박혜란	선동수	신두철	양세영	유록수	이갑수	이상복	이윤항
김재성	김찬석	김혜숙	맹성렬	박상인	박은아	박호걸	선철용산	신봉기	양수장	유명진	이강운	이상봉	이원식
김재열	김찬형	김혜순	목영주	박상현	박은정	박화영	선준국	신봉진	양연식	유병서	이건호	이상엽	이원재
김재일	김찬호	김호	문경식	박상형	박은현	박화자	설원식	신상진	양원표	유송	이경락	이상엽	이원재
김재하	김창균	김호	문광기	박석순	박응순	박후근	설창인	신선철	양유정	유연삼	이경수	이상우	이원희
김재홍	김창범	김호경	문상준	박석현	박의용	박훈	성광식	신영철	양윤숙	유인상	이경숙	이상윤	이윤규
김재화	김창선	김호균	문석진	박신규	박인선	박희령	성규성	신영철	양인준	유인환	이경우	이상윤	이윤배
김재환	김창식	김호성	문세영	박선아	박인수	박희선	성병화	신원기	양창우	유일용	이경중	이상은	이윤상
김정국	김재윤	김호식	문소상	박선오	박재갑	박희연	성신	신용준	양채열	유재경	이경태	이상진	이윤선
김정돈	김천	김호연	문인섭	박선희	박재익	반영철	성윤숙	신우현	양태훈	유재민	이광섭	이상진	이윤호
김정민	김철	김호철	문정현	박성배	박재천	방상윤	성인제	신은정	양혁승	유재욱	이광열	이상철	이은재
김정수	김철주	김홍규	문치호	박성아	박접수	방정혜	소경섭	신인철	엄원중	유재혁	이광택	이상희	이의영
김정욱	김철홍	김홍업	문태현	박성용	박정민	방중수	소소창	신정무	엄철나	유중성	이광필	이석규	이인영
김정현	김철환	김호선	문현국	박성정	박정석	방효창	소재두	신지영	여진	유진상	이광현	이석기	이일권
김정호	김충환	김호원	문현정	박성혁	박정식	배동준	소진성	신철영	여해경	유평준	이규철	이석범	이장희
김정호	김치수	김희연	민남미	박성호	박제화	배영환	손건일	신현호	염규석	유해신	이규혜	이석제	이재걸
김정호	김태균	김희철	민병욱	박성훈	박종국	배유아	손경익	신화정	오경준	유형임	이균성	이석진	이재길
김정훈	김태균	나권일	민수영	박세균	박종규	배은경	손무길	심동준	오길영	유혜영	이근조	이석형	이재욱
김제후	김태수	나병현	민희숙	박세원	박종근	배장수	손봉호	심인석	오상준	유호림	이근조	이선신	이재완
김종근	김태수	나소팔	박건영	박세중	박종선	배종석	손상석	심충진	오세형	유호성	이근태	이성구	이재운
김종덕	김태승	나일주	박경서	박세현	박종소	배천호	손성국	심해정	오세호	유희동	이금희	이성균	이재은
김종록	김태완	남준희	박경숙	박수행	박종우	배종일	손성일	안규창	오순택	유희숙	이기송	이상근	이재민
김종목	김태진	남기원	박경준	박수기	박종우	백경아	손승태	안경숙	오승훈	윤건수	이기우	이상민	이정규
김종민	김태현	남상권	박광태	박승대	박종원	백미순	손재운	안기정	오용식	윤득구	이기웅	이상복	이정남
김종배	김태현	남상욱	박광현	박승배	박종원	백병성	손정근	안병선	오장환	윤명	이기호	이상형	이정성
김종익	김태형	남원호	박근호	박승상	박주은	백요한	손준보	안병익	오정균	윤상균	이낙연	이소영	이정수
김종혁	김태형	남재걸	박기서	박승욱	박준수	백정숙	손호중	안영훈	오제명	윤석호	이낙원	이송수	이정임
김주규	김태호	남현주	박기영	박승준	박중철	백진현	손희준	안완용	오중현	윤숙자	이남경	이수연	이정현
김주목	김태호	남호원	박기철	박승진	박지원	변동철	송기민	안용식	오창훈	윤여림	이다혜	이수영	이정호
김주영	김태훈	노범영	박기훈	박시근	박지혜	변동훈	송기호	안인화	오현석	윤여진	이다열	이수인(이	이정후
김주중	김태훈	노상현	박남규	박양제	박지환	변상해	송다겸	안정혜	오현철	윤영곤	이다영	주원)	이정훈
김주현	김평진	노연경	박노건	박영규	박진순	변수원	송덕원	안종범	오희성	윤영천	이덕영	이숙희	이정희
김준	김학수	노재원	박달현	박영규	박진아	변재근	송미영	안종한	오희택	윤은선	이덕희	이순기	이정희
김준배	김한기	노재훈	박동렬	박영기	박진호	변창우	송병록	안지현	우호식	윤은주	이동규	이순배	이종규
김준식	김하나	노정호	박두영	박영남	박진홍	봉흥선	송병주	안진걸	원동환	윤인오	이동석	이승대	이종길
김준영	김해성	노진주	박미나	박영민	박창욱	서경호	송수영	안철원	원영진	윤일성	이동엽	이승섭	이종수
김준호	김현동	노창수	박미라	박영민	박창임	서순탁	송연미	안효정	원제환	윤정섭	이동한	이승우	이종열
김지연	김현석	노희철	박미선	박영수	박철수	서영덕	송영주	안희상	원중호	윤종길	이동호	이시연	이종윤
김지영	김현성	대성운수	박민수	박영웅	박철주	서완석	송용석	안희숙	원혜영	윤종빈	이만호	이애화	이종희
김진경	김현수	라요훈	박민준	박영철	박춘건	서윤석	송원기	안희정	위평량	윤중호	이명진	이연재	이주하
김진구	김현정	류도암	박민진	박영환	박춘호	서은경	송인섭	안희철	유관영	윤중식	이명천	이영란	이주희
김진만	김현정	류시문	박병오	박영훈	박치우	서정일	송인윤	안희철	유기석	윤지원	이명훈	이영범	이준모
김진명	김현희	류종렬	박병욱	박용석	박태선	서정화	송재경	양광희	유기찬	윤진철	이모세	이영을	이준영
김진섭	김형규	류종석	박병일	박용정	박태순	서종대	송하동	양대규	유기창	윤창원	이봉숙	이영호	이지영
김진수	김형균	류지성	박보성	박용제	박태영	서종철	신동민	양동호	유기현	윤한필	이봉형	이용근	이지훈

이진경	장문호	정병오	정혁제	진상화	최지한	홍도천	전국(광주광역시)	권일	이병준	김태룡	김중구	한준구	윤소모
이진영	장미은	정병철	정현근	진영수	최지훈	홍미미	전국(광주광역시)	김경희	이상협	김택성	김주호	홍명근	이광중
이진원	장민수	정상룡	정혜승	진원석	최창배	홍성근	전국(광주광역시)	김광만	이양재	김현아	김창석	황대중	이귀너
이찬영	장병호	정상미	정혜승	진유식	최창호	홍성환	전국(광주광역시)	김금옥	이유미	나태균	김태환		이숙희
이창민(철우스님)	장보름	정상욱	정희성	진중화	최철호	홍순관	전국(광주광역시)	김기성	이은재	박병식	김학성	강릉경실련	이요한
이창엽	장석림	정석원	정희숙	차은상	최철호	홍순영	전국(광주광역시)	김덕기	이재문	서경수	김형만		이윤일
이창호	장석춘	정석희	정희창	차진구	최철화	홍영희	참여연대	김도영	이정식	신희권	노귀남	고석태	이은주
이창희	장성현	정선애	조강훈	채대영	최혁	홍원선	한국노총연맹	김동식	이정아	심제원	당명숙	고재정	이정민
이철우	장승진	정선철	조강희	채민성	최호영	홍종학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미경	이제선	유주상	문행규	구광범	이제영
이훈수	장심영	정성남	조건영	채원호	최홍엽	홍종화	환경운동연합	김석기	이주희	이대순	박경서	권상동	이주석
이충현	장영식	정성봉	조경민	채홍석	최희수	홍준표	해양수산부	김성수	이창수	이덕우	박근해	권오석	이지은
이태용	장영오	정세진	조광현	천민승	최희수	홍준현		김세용	이현주	이명근	박성국	김남두	이진아
이태진	장영환	정세훈	조광희	천병우	최희준	홍진구	경제정의	김영	이희승	이순기	박용현	김남영	이효숙
이학수	장욱	정승상	조규홍	최광규	추동균	홍창기	연구소	김재령	임경수	이영길	박은주	김대진	임명희
이학용	장원택	정승준	조병익	최광용	추우성	화강윤		김재익	임영희	이지연	박준우	김덕기	장신애
이한길	장유리	정승화	조성하	최광현	하상준	황경복	곽수근	김종길	임형백	이진	박준형	김동명	전규화
이한민	장은미	정연섭	조성희	최근현	하용호	황광열	김범	김준현	장명진	이창수	배인교	김만재	전방욱
이한범	장일진	정연욱	조성훈	최기환	하윤진	황기명	김지환	김철출	전은호	이태호	배종근	김봉래	전영권
이형섭	장재영	정왕규	조성희	최덕천	하재현	황도수	김혁	김태호	정성훈	장영	서관승	김석래	정광민
이현미	장재훈	정용화	조순열	최덕현	하현아	황상하	노영록	김형욱	정애리	장윤정	송정호	김선연	정석중
이현재	장종철	정운수	조순홍	최덕호	한동환	황선영	문인철	김호현	정인환	장진영	신영욱	김선정	정세환
이형세	장찬홍	정원철	조승환	최명희	한문희	황선용	박상안	나인수	조돈철	전종찬	신종성	김재부	정의호
이혜수	장철기	정원희	조연성	최범식	한상윤	황선원	백승호	노두승	조우형	정경수	안춘희	김재준	정의훈
이호경	장형환	정윤영	조연정	최병철	한상일	황영미	백종호	노용래	조재형	조영관	위정희	김정근	정혜진
이호섭	장혜령	정익희	조용기	최석준	한상훈	황유경	손준	도선봉	최강림	추승우	윤영전	김중남	조우현
이호욱	장홍석	정익홍	조일홍	최성수	한석웅	황이남	손창민	류성룡	최두호	하성용	윤태룡	김진숙	조백훈
이화주	장희곤	정인호	조재연	최성주	한선아	황이숙	송문학	류중석	최명철	이승규	김진욱	진수환	
이훈	전대홍	정일용	조재호	최성현	한성철	황인구	여은미	민범기	최봉문	통일협회	이우영	김형근	최규천
이희중	전병순	정재영	조정근	최수만	한승구	황인선	윤언철	박경남	최윤정	이정호	김형경	최복규	
인치승	전병식	정재은	조종운	최수진	한승호	황정국	이덕호	박상위	최정우	강만성	이정우	김형근	최승길
임건택	전봉양	정재진	조종철	최승섭	한승호	황철진	이승훈	박성우	하동익	강은석	이중수	김태희	최소희
임명호	전봉진	정정래	조주희	최승우	한연하	황호식	이혜란	박연환	함승희	고석주	이진만	노영성	최승룡
임상혁	전상룡	정제용	조준범	최연태	한영관	황효열	임효창	박영웅	허도한	고유환	이현희	박운남	최우현
임서구	전상용	정준원	조준형	최영식	한용환	황훈주	정길채	박정윤	현철재	곽일환	이화용	박인재	최중문
임성희	전상욱	정주연	조종현	최은아	한태경	정홍준	박찬우	녹색소비자연대	권수복	임홍승	반태연	한동준	함식
임세은	전성철	정준수	조진만	최원영	함동균	(사)녹색교통운동	천미림	박희정	법무법인 한누리	김근식	장인석	배정순	함식
임영환	전영진	정중식	조진수	최원천	함두호	(사)우리나라미래연구원	최재윤	배용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동규	장형원	서은주	홍용표
임용기	전용배	정지연	조진오	최유영	함영선	(사)한국MCA연합회	하능식	서민호	이만세방법인	김민식	전귀정	송문길	홍진원
임용찬	전용일	정지연	조철제	최은진	함형욱	(사)한국여성우회	홍창식	서순탁	한국MCA전국연맹	김병조	전영선	송민석	한살림강
임은경	전우영	정지용	조현성	최은철	허남중	(사)한국여성연맹	황은경	신행숙	한국사회활동센터	김삼수	정동욱	송재석	릉생활협
임왕원	전필기	정진민	조현익	최인호	허범녕	(사)환경정의	황정호	심재민		김성호	정승훈	신미영	등조합
임정규	정강자	정진우	조형준	최일	허범권	(사)홍사단		심준신		김용현	정창현	신승춘	
임종필	정경욱	정창룡	주상희	최장원	허석	금융소비자연맹	도시개혁	양우현	시민권익	김은수	조광환	심규만	거제경실련
임청민	정광화	정창운	주인권	최재민	허수범	금융정의연대	센터	오세형	센터	김일한	주석부	심윤보	
임태영	정덕임	정태근	주정은	최재용	허정준	생태지평연구소		월정사		김장철	최우진	심재상	강경수
임현진	정동영	정태영	지동섭	최정표	허중호	선우인터네셔널	고일두	윤재용	김강준	김재기	최명규	심한섭	강병주
장경환	정란아	정태성	지동익	최준용	허지영	세필조경 디자인	공병준	이동근	김상현	김재원	최호창	양창훈	강성배
장권	정만중	정태안	지영근	최준혁	형성훈	소비자와 함께	곽도	이만희	김석기	김정웅	추재훈	원경숙	강연희
장동민	정명재	정택수	지영석	최종길	홍광선	심평의원(주)우회	곽중삼	이명수	김영미	김정진	한광수	윤도현	강정숙
장두호	정미화	정필성	지정희	최종민	홍대식	아름다운의원	권영진	이민석	김태경	김정현	한정훈	윤성원	강정효



강창수	박애숙	이은경	고영원	김종미	박종미	오명희	이호석	한금희	김영채	박창기	유영표	정원태	(주)해당도시가스
강학도	박용안	이승선	고완철	김종진	박종빈	오민석	이호열	한상미	김영현	박창수	유현	정윤남	(주)호원
경명자	박인근	이장명	고재원	김진경	박주한	오성남	이호성	한윤선	김영환	박창현	윤두중	정은수	강신주내과
고영주	박태원	이장표	고형복	김진숙	박준서	오혜란	임삼례	한창욱	김영환	박철웅	윤봉란	정일용	고려가스(주)
권대용	박혜수	이정택	곽도훈	김진일	박진석	우동훈	임진희	한홍기	김용채	박태규	윤봉영	정찬용	고려가스(주)광주
권인호	배동주	이종우	곽병미	김철수	박춘선	우병실	장선	허기용	김용태	박형철	윤홍성	정해경	주식회사(주)영광
김경덕	백세정	이주일	곽은	김학준	박태준	원범재	장진아	허성우	김인수	배백호	은광석	정해련	광주전남민연련
김경섭	백순환	이철용	구교형	김현정	박형근	유수연	전광섭	허정호	김일호	배용태	이길남	조경록	광주(주)대우건설
김경수	백승일	이한길	구차환	김현정	방소현	유흥우	전종석	허중은	김재중	백석	이동민	조광득	금호고속(주)
김귀호	서용찬	이형로	권순남	김현희	배권식	윤문선	정병오	허창순	김재찬	백익순	이명구	조교영	대광세미유통고
김기만	서주종	장석주	권혁이	김혜정	배준	윤승형	정상영	홍은선	김정훈	박종기	이봉주	조선익	대창운수(주)
김대봉	서현주	전갑생	김기연	김효숙	백정순	윤종미	정선유	홍진호	김지인	변동철	이상걸	조성식	대광건설(주)
김민수	성만호	전기풍	김경태	김희수	변미애	윤철	정애숙	황동식	김창재	변원섭	이상운	조인형	디케이주식회사
김상기	손성미	정보건	김경표	남기표	변성수	이강순	정유석	황인란	김철현	변재영	이상각	조재곤	라인건설
김상일	손은희	정석윤	김경화	남윤화	변한주	이건복	정은영	황재연	김해룡	서문현	이성근	조재우	백석세무회계사무소
김상호	손정식	정선우	김기영	노병일	서두원	이금숙	정은희	(주)문영종합개발	김현	서민호	이성길	조현지	버스조합
김석준	손진일	조승재	김남권	노용래	서방자	이기영	정인애	(주)서리세이빙	김현모	서상기	이승노	조훈	신흥택시(주)
김세린	송오성	조오현	김남현	노혜숙	서삼례	이로사	정중환	다산빌딩	김현석	서상기	이연	주호연	인셀(주)
김영우	송호석	조지경	김남희	노희준	서순자	이말복	정지선	법무법인 신하	김현중	서수연	이은방	지명순	중흥토건(주)
김영화	신미경	조하영	김다솜	류경희	서용원	이명숙	정진우		김현철	서재형	이인수	지병근	참여자치21
김옥희	신미애	진성우	김동범	류미숙	서유리	이미경	정찬규	광주경찰서	김효중	서해자	이재석	지현도	태양광발전소
김용운	신부연	진휘재	김동진	류정희	서은경	이미희	정학균		나미영	선종아	이재윤	차현승	한샘
김원용	신용호	최삼주	김민재	문진숙	서이석	이병렬	정혜경	강은섭	나병철	설상옥	이정근	채인기	합치세무로열주
김정미	신찬숙	최선종	김민주	민찬식	소문주	이병순	정희진	강정미	나성영	성윤희	이정량	천재영	
김정현	심재국	최은용	김봉석	박경옥	손선주	이병철	정희진	고근	나홍덕	손범환	이정섭	천형욱	구미경찰서
김중현	안미나	최윤숙	김봉화	박계량	손술이	이복자	조범상	고형석	노희정	손성만	이정주	천홍식	
김침침	안광선	최은진	김성열	박광수	송경섭	이부소	조상희	공수현	류한호	손정식	이정학	최동기	강명천
김종근	여남권	한장용	김선호	박기은	송해선	이석석	조아라	구희선	모현숙	손희정	이종성	최성수	강승수
김판별	여정애	허남두	김성자	박명은	신기람	이성숙	조옥경	권충화	문정찬	송원식	이준영	최영남	강신용
김판희	염경수	허추구	김소윤	박문경	신통렬	이성진	조은하	기우태	문해옥	송윤주	이학균	최용석	강현주
김필성	오성관	허희경	김수연	박미경	신민선	이송재	조태섭	김경미	박광복	신성원	임기춘	최윤정	고영호
김한기	오성주	현정임	김수진	박미영	신복인	이승봉	조해성	김경원	박남규	신은희	임동훈	최정구	구자근
김현호	오순혜	홍성태	김승복	박미정	신성은	이양희	조혜주	김경현	박미정	신재안	임성태	최종섭	권구일
김효일	육근호	황분희	김애란	박미정	신숙진	이연주	조하영	김광영	박영규	심재훈	임숙경	최주영	권보
니양주	육방호	황점득	김영근	박미화	신영옥	이연숙	조흥식	김기보	박병일	안영균	임영범	최진규	권순서
남기원	육춘금	황한성	김영미	박민관	신윤철	이영신	주태진	김길현	박상규	안현석	임용희	하주아	권운택
남덕희	육홍석	황황욱	김영필	박민영	신은숙	이영희	지미선	김남수	박상원	양동윤	임정훈	한명석	길윤욱
남희정	육혁수	기산종합건설(주)	김용관	박복임	신혜정	이원영	진장호	김덕은	박성수	양명희	임정휘	한희주	길호양
노승복	우정숙		김용길	박상윤	신혜진	이윤식	차병일	김동욱	박수경	양성호	임종연	허기석	김귀화
노재남	원순실	광명경찰서	김원선	박서윤	심상록	이은경	차성미	김동현	박수인	양현인	임현철	허문수	김낙관
노재천	유차상		김윤권	박성민	심해진	이은상	차정운	김문수	박양우	양해령	임형채	홍영신	김도형
류금렬	유천업	강성철	김윤욱	박성배	안경애	이은영	최경자	김미남	박영덕	엄창수	임형철	황덕자	김동욱
문상모	유태영	강신재	김윤재	박승원	안석모	이은재	최경화	김병철	박용수	여상구	장익수	황동현	김문환
문상필	윤길정	강옥영	김윤호	박영훈	안철환	이재춘	최미영	김상국	박용	오경례	장익	황보관석	김보준
박광호	이도영	강옥희	김은진	박옥남	양금석	이정희	최상철	김성일	박익화	오미정	전홍모	황윤용	김봉교
박대기	이명화	강윤숙	김재성	박은경	양기대	이중석	최영자	김수영	박정열	오윤숙	정강택	(유)영진에너지	김성만
박명옥	이상귀	강주례	김정	박재철	양정현	이현우	최재석	김순재	박종근	오주섭	정두숙	(주)광주은행	김연고
박성호	이상천	강찬호	김정미	박재희	양철원	이혜수	최철규	김영규	박종렬	오지혜	정병호	(주)대원가스산업	김요나단
박수정	이양식	강희규	김정숙	박정선	양희연	이혜진	추규호	김영길	박준곤	오치홍	정상문	(주)미래전기	김윤희
박순옥	이외자	고미라	김정자	박종기	오광덕	이혜진	하숙례	김영남	박찬숙	유방실	정용완	(주)영일마트	김은희



송희진	정호원	고명석	김심문	김정숙	도한영	방성애	신동욱	오철조	이만수	이학봉	정성문	주수현	허두봉
신관용	조기석	고순생	김상수	김정숙(2)	류강렬	배광호	신동윤	오태석	이명식	이현우	정성문	주안나	허민도
신재범	조성익	고인홍	김상길	김정순	류유훈	배성훈	신만석	옥성애	이미경	이현재	정세자	주재민	허진욱
심재경	조순형	고재일	김상배	김정택	류은영	배수미	신병훈	옥진우	이민호	이현주(3)	정순영	지경아	허혜녕
안영하	조영교	고정연	김삼옥	김정현	류중성	배용준	신상구	왕인	이병기	이훈진	정신모	지은아	현지훈
양영희	조용호	공병승	김상태	김중구	류진호	배혜래	신상해	우명자	이병준	이희길	정애니	진동식	홍경자
양승희	조준범	구명중	김석준	김종기	모삼선	배화숙	신성환	우성철	이병진	임무진	정영점	진수진	홍봉선
양영주	차경아	구주영	김석호	김종기(2)	문규성	백평호	신승균	우정용	이병호	임우택	정용성	진효상	홍일표
양판승	천현중	구효승	김선년	김종민	문상철(2)	변희중	신영호	원허	이봉진	임종수	정용수	차동박	황범하
오민정	최명숙	권명섭	김선미	김종한	문재천	부두봉	신유천	유수윤	이상백	임호	정은선	차동욱	황보승희
오승주	최병기	권범현	김성권	김주영	박도영	서경국	신정희	유영명	이상진(2)	임훈	정장한	차진구	황영식
오형열	최연식	권성빈	김성근	김주현	박동범	서미화	신철성	유영택	이상현(2)	장귀봉	정재호	차창호	황인
원오준	최완수	권오성	김성길	김주호	박미경	서범수	신해송	유완식	이선희(2)	장다감	정정대	천병훈	황인구
유경생	최일	권은경	김성수	김주희	박미영	서봉원	신항남	유재기	이성권	장문숙	정중학	천상수	(직경예내지)
유광호	최종영	권재현	김성열	김준기	박민우	서수근	신현무	유재엽	이성열	장문정	정중화	천용욱	이창태경성유임
육준혜	최효길	권태섭	김성춘	김진	박병만	서양수	신형이	유재중	이성환	장봉주	정주영	천정호	주식회사무학
윤치솔	최환석	김가야	김성태(2)	김진필(2)	박복용	서은정	신해숙	유정기	이성훈	장성호	정지원	천현수	
이명희	하상복	김갑환	김성호(2)	김진현(2)	박봉수	서종석	심근해	유정동	이성희(2)	장용진	정진교	최남연	속초경실련
이문희	한상호	김경일	김성훈	김진홍	박석원	서현식	심미예	윤강훈	이승우	장윤석	정창오	최달용	
이범수	한태연	김경조	김성훈(2)	김창희	박선아	서혜숙	심상조	윤경만	이영갑	장재구	정중희	최병근	강동우
이병채	홍건숙	김경택	김성훈(3)	김철도	박성수	서호영	심성구	윤나영	이영신	장준홍	정지금	최보규	강미심
이상권	홍국선	김광식	김수미	김춘덕	박성철	서효정	심윤정	윤동혁	이영호	장지태	정태영	최선아	강석태
이성로	홍근표	김길수	김수빈	김태경	박성훈	석승희	심윤정(2)	윤상미	이옥형	장해욱	정태효	최성관	강신길
이인수	홍석준	김남식	김수자	김태구	박세간	석진열	심인설	윤상현	이용주	장희정	정하운	최수영	고영진
이재광	홍순길	김남일	김승주	김태훈	박승제	선근우	심형철	윤석준	이원경	전보익	정한성	최승환	고인선
이정진	홍진표	김달기	김영희	김태희	박시우	선석렬	이영아	윤성미	이위덕	전선임	정해균	최영현	고충문
이창화		김대래	김영길	김학진	박연수	설광석	안경옥	윤수성	이은희(2)	전세표	정해명	최원석	고현주
이찬식	부산경실련	김대중	김영신	김해롱	박영봉	설호석	안영석	윤영태	이을찬	전운배	정현돈	최원용	공정관
이천호		김도	김영욱	김해영	박영현	성병창	안문상	윤재성	이일용	전우철	제미경	최은주	곽병용
이철수	강경태	김동영	김영욱(2)	김향남	박용주	손병열	안병록	윤재철	이재정	전일수	제연화	최을림	곽중환
이철호	강규성	김동연	김영호	김현욱	박용하	손상용	안연균	윤재현	이재호	전진영	조명래	최재명	권종식
이한경	강대영	김동호	김용섭	김현재	박용한	손순용	안원하	윤정선	이정남	전찬일	조명제	최재호	길목
이현중	강미라	김명석	김용원	김형균	박윤기	손영일	안원호	윤정현	이정민	전현수	조삼현	최진욱	김철
이형우	강민석	김명섭	김용필	김혜경	박재본	손원우	안재민	윤지영	이정식	전호열	조상희	최철원	김경석
이형완	강민정	김문규	김원태	김혜경(2)	박재욱	손정현	안종일	윤태환	이정향	정광현	조수희	최혜경	김경순
이홍성	강병석	김미경	김유경	김호범	박재울	손창욱	안대건	윤현철	이정호(2)	정권영	조양래	탁영민	김계남
임동관	강병호	김미경(2)	김윤영	김홍재	박재홍	손창우	양동열	이강진	이정환	정규용	조연승	하상철(2)	김나영
임종석	강성태	김민철	김은숙	김홍태	박정구	손치훈	양시경	이경학	이정훈(2)	정근	조영규	하성훈	김남춘
장미	강시명	김백철	김은영	김홍휘	박종덕	송상연	양은진	이귀순	이종남	정기섭	조용규	하순금	김동수
장은숙	강예운	김병근	김은주	김훈	박종수(2)	송순임	양재화	이규섭	이종석	정달식	조용언	하주수	김동순
장종국	강유통	김병기	김인한	김훈태	박종호	송원섭	양종필	이규현	이종원	정도영	조용한	한기성	김말순
전종국	강인중	김병용	김장섭	남경태	박진성	송은주	양진영	이남기	이종학	정동만	조유장	한병무	김명섭
전철균	강정규	김병하	김재경	남기찬	박찬일	송재광	엄세원	이남중	이주영	정동열	조은득	한병철	김미정
전철영	강주하	김보엘	김재명	남영현	박철중	송재은	여재호	이동률	이주현	정말순	조은환	한상준	김미정
정남준	강종묵	김복준	김재식	노경조	박철한	송정숙	오병루	이동윤	이주환	정명길	조은정	한성국	김병욱
정명우	강태문	김봉국	김재일	노광진	박태주	송중두	오상준	이동일	이준승	정명식	조종석	한성안	김부석
정승임	강필원	김봉규	김재찬	노상훈	박한규	송중화	오상환	이동진	이중하	정명희(2)	조준영	한소리	김상기
정영창	강해상	김부근	김정량	노영욱	박희선	송중환	오세룡	이동환	이진수	정미경	조지혜	한재철	김선일
정진대	강형숙	김부민	김정민	노일용	박희영	신경근	오연석	이동훈	이진수(2)	정미한	조홍규	한종석	김선철
정혜수	경규성	김보이	김정수(2)	노효길	박희정	신군재	오지영	이동희	이춘구	정민재	조효제	한효준	김성권

김성근	동병희	심연철	이언우	조한국	나민수	양우혁	이종령	최인수	오정록	김세원	박준연	이용진	
김성미	라용일	안경수	이열호	주대하	강미경	나태성	양재철	이종만	최인자	위미영	김승철	박태순	이정미
김성욱	문재용	안국자	이영선	주영래	강민철	남택진	양진하	이종주	최재훈	이상휘	김영림	박해부	이정민
김성울	민현정	안세준	이영수	주용현	강인선	노중용	양홍석	이주연	최중후	이욱기	김영숙	박홍래	이정아
김수자	박경미	안종석	이영순	지소영	강창환	도진욱	염규용	이주현	최진학	이종철	김영애	박희경	이주옥
김수정	박경심	안종원	이우영	진장수	강학천	명홍진	예인기	이진성	최진환	이천오	김영희	백영국	이창수
김순복	박경자	양영희	이운연	진형배	강희진	모성은	오동석	이찬용	최찬호	장동식	김옥경	서정열	이천환
김순봉	박근철	양진옥	이은희	천성미	고기준	민경록	오동욱	이창모	하만호	장문석	김옥수	서혜경	이혜내(허용녀)
김승길	박덕희	양해준	이인숙	천성필	고병억	박다예	오세환	이창진	하순진	전대길	김윤재	석진성	이희대
김승숙	박만용	어주하	이재선	최관식	고재홍	박동선	오완석	이판수	하창호	정순관	김은주	설점순	이희연
김승철	박명종	엄경선	이재정	최근석	김경수	박성대	오일용	이필근1	한경수	정은희	김정란	성준모	임명자
김시형	박병훈	엄천수	이종섭	최길순	김경호	박승자	오지현	이필근2	한경희	조병록	김재동	송창식	임미선
김연미	박상준	엄태영	이종식	최돈환	김기덕	박완기	우양미	이해균	한곡지	주지은	김종길	신남균	임현규
김영석	박성진	오광택	이종식	최동권	김도형	박용환	이상태	이현미	한상복	한고(임승남)	김지영	신동국	장동균
김영식	박성한	오모현	이주연	최동훈	김동선	박원호	유재성	이현순	한상울	홍상우	김지훈	신윤관	장동일
김영아	박세찬	오승택	이종길	최서호	김동원	박윤환	윤규현	이호섭	한창균	황의병	김창근	신정환	정미진
김영호	박수경	오윤택	이진여	최성주	김말순	박은호	윤두천	이희수	한창석	비손이연씨	김창모	신청하	정명숙
김용일	박승민	오홍철	이진형	최승명	김미선	박익중	윤미경	이희숙	한풍교	순천농업	김창하	심규호	정세진
김원기	박영덕	원은주	이철	최애리	김미옥	박재관	윤석신	임운순	허성균	협동조합	김철환	양근서	정승현
김원일	박영희	유성봉	이태열	최영미	김미정	박재순	윤희경	임태정	허윤범	황인용신	김조환	양태호	정안철
김유경	박용기	유영민	이필선	최용석	김민수	박재현	이경섭	임혜경	허현태	경과의원	김춘호	양현석	정연주
김유리	박정민	유영창	이필순	최유정	김복녀	박준배	이경환	장명욱	홍사준		김태훈	오관영	정용기
김은희	박종갑	유종완	이현미	최종현	김봉균	박진순	이금희	장성근	홍영호	안산경실련	김해만	오남숙	정은숙
김인식	박종학	유주희	이호석	최지문	김성연	박태경	이길영	장점숙	홍중수		김현삼	오은석	정은혜
김일환	박종현	유해정	임대식	최지인	김시영	박형순	이명욱	정계화	황경희	강경호	김현호	오정순	정이진
김재학	박종훈	윤광훈	임시연	최진철	김영기	박화진	이민구	정문호	황대호	강기성	김혁욱	오진호	정진순
김정식	박희식	윤규식	임성길	최택수	김영래	배창수	이범선	정수진	황민석	강수문	김해숙	오현주	정종길
김정인	반영덕	윤기순	임종희	최형덕	김영태	백순자	이범주	정순혜	황성우	강수진	김혜영	오현주	정주호
김정훈	방대식	윤신남	장경민	최해경	김완동	백혜련	이봉로	정양훈	황용원	경삼수	김호득	왕은희	정진욱
김종담	백석진	윤재훈	장성원	최효섭	김용일	변영선	이상명	정원제	<small>주황22년 - 22년</small>	고관	김희궁	원미정	정철욱
김종윤	변성수	윤재희	장은선	탁동철	김용철	서상범	이상애	정태정	<small>22년 22년 22년</small>	고미나	나정숙	유창희	제종길
김주철	변인미	윤정은	장재수	한상민	김웅	서수정	이상해	조경두		고영인	남기순	윤다미안	조경래
김준섭	서영기	윤준	장재환	한성희	김은하	서정근	이상호	조병모	순천경실련	곽도훈	남양숙	윤명숙	조안호
김진태	서은진	이건옥	장주열	한정숙	김인석	서정욱	이상희	조석환		곽태영	남정애	윤상민	조재기
김진태	석명환	이경상	전용성	함국기	김재기	서환	이수행	조승백	강철호	권태근	도원중	윤성웅	주만수
김진희	선영복	이경애	전이령	함준식	김재성	서홍석	이승호	조영춘	강현주	김경숙	류영숙	이갑순	최경숙
김천수	소문섭	이관	정봉재	허우린	김정욱	성기원	이영인	조은석	김미정	김경애	문강섭	이강숙	최복수
김철민	손병섭	이기원	정상철	홍련암	김종석	성명순	이영주	조형훈	김선명	김경욱	문연숙	이경란	최영화
김철수	손재복	이대복	정순희	홍명관	김종선	성현구	이용욱	주광애	김성준	김기범	민병권	이경석	최운
김철환	송경희	이돈섭	정양언	홍인숙	김종오	손성배	이용호	주영수	김종선	김기희	박경용	이경진	최윤정
김춘식	송제철	이동균	정연미	홍전희	김준혁	손현미	이운창	주영훈	김준호	김대일	박경중	이근미	최임이
김충남	송종철	이문규	정용주	홍해용	김직란	송원찬	이원욱	지영호	김지훈	김동인	박경태	이미숙	최재우
김태영	신대섭	이문성	정원모	황보해용	김진한	신경환	이원재	진대운	김태호	김명연	박금자	이민근	최재림
김형걸	신선익	이문영	정윤희	황시영	김정극	신동섭	이윤규	진송주	김현덕	김미영	박동신	이벽희	최현수
김형기	신영근	이미경	정은희	황영필	김충관	신지훈	이의봉	진한중	김혜선	김민	박성진	이병욱	하은희
김호준	신재민	이병선	정진욱	<small>(주)강원으로</small>	김혜영	신한미	이재문	최문태	나창수	김병재	박승렬	이선희	하혜경
김희근	신종출	이봉진	정홍기	<small>22년 22년 22년</small>	김현태	심재광	이재식	최병정	박병희	김복희	박승희	이숙경	한수연
김희정	신창승	이상정	조광덕	한살림	김혜련	심현자	이재혁	최석환	박재현	김상혁	박영준	이숙란	현유경
남상진	신현식	이상호	조명수		김효근	안필규	이정원	최성배	박철우	김석용	박정희	이양주	형천호
노금희	신홍사	이수영	조성열	수원경실련	김훈	안혜영	이정하	최영숙	서용현	김성봉	박중호	이욱희	홍경남



황영순	박민기	윤경일	조춘선	박선애	구경혜	김연희	목현실	서성원	우순애	이순창	임선미	지정철	허림
양양경실련	박보정	윤덕규	조향옥	박성현	구준모	김영근	문미자	서원교	우순희	이승남	임성규	지효숙	허병석
	박석두	윤수영	조현주	박숙희	권광일	김영숙	문승옥	서은숙	우중만	이양순	임성식	진선중	허수행
	박성진	윤정원	조효미	박연호	권순원	김영자	문연래	서재호	우현녀	이영우	임승한	차준은	허임범
	강신우	박수형	윤종대	지은숙	배선주	권순원	김영자	민승례	서정순	원경희	이영채	임은혁	채봉수
강병국	박애경	윤형로	진랑규	서영남	권영미	김영준	박경룡	서희숙	원종순	이영현	임철만	천기영	허준환
강원철	박옥경	이경우	채 현	서호영	권영배	김영춘	박경미	성주영	유경윤	이영훈	임현권	천병기	현주섭
고봉철	박장수	이그루	채풍목	신재현	권영진	김옥자	박기환	성희연	유상열	이옥희	장경자	천재영	홍경아
고혜란	박태원	이갈현	천귀선	심경택	권영훈	김왕곤	박명순	송경은	유상희	이용근	장교환	최대규	홍성동
구민진	박현일	이대형	최귀주	심재수	권오섭	김용섭	박명철	송영득	유승열	이용만	장영란	최동규	홍원표
권오병	방민경	이동연	최두영	안성용	권오주	김용태	박병건	송영득	유재경	이용연	장원섭	최병주	홍은하
김경덕	배만병	이동준	최석운	양삼덕	권혁봉	김우재	박병대	송이식	유재춘	이우정	장원주	최병탁	홍종민
김경수	배연정	이영규	최성범	오승석	권혁왕	김은경	박상옥	송정호	유혜란	이운용	장재훈	최복순	황경애
김경철	배우한	이영춘	최소영	윤주현	기보중	김은이	박상용	신계영	윤광석	이윤숙	전상진	최성원	황규문
김경희	백종덕	이미순	최영식	이상미	김 준	김은하	박상임	신덕선	윤남선	이은자	전성호	최옥명	황규문
김광윤	서동일	이반석	최영준	이식	김강산	김은희	박선규	신동신	윤남용	이의성	전영석	최용철	황인동
김대우	서시은	이상건	최진식	이유형	김경건	김은희	박선영	신동윤	윤수영	이익재	정병관	최운용	황인재
김덕현	서진숙	이선희	하보균	이정희	김경률	김의섭	박성희	신동천	윤수영	이재범	정선옥	최은실	황현숙
김동운	선유하	이수진	홍성현	이철	김경림	김인기	박수자	신두임	윤준호	이재용	정성기	최인근	황유경(전사)이경
김동현	성종규	이승용	홍승희	이평호	김경자	김재순	박양래	신영호	윤태범	이재학	정순현	최인식	서민(전)에이트링
김영주	송명원	이연호	황규영	임호상	김경중	김재임	박옥선	신원재	윤향숙	이정길	정승수	최재화	
김영해	송애영	이완용	황순찬	장준배	김경화	김재홍	박인오	신은순	윤혜숙	이정숙	정옥형	최정관	인천경실련
김민성	송영배	이용성	황현주	정남숙	김광식	김정범	박인오	신종옥	윤희태	이정형	정유리	최정숙	
김민정	송요찬	이의협	정대훈	김광인	김정수	김일엽	박일엽	신종옥	이종원	이종승	정유지	최정화	강경하
김성동	송진대	이자형	정승환	김금녀	김정천	박재선	신철승	이강문	이강문	이종한	정유희	최종	강덕우
김수은	신권대	이정숙	정장식	김기석	김종원	박재우	심관보	이강수	이주윤	정은영	최종	강명선	
김숙옥	신도선	이종인	강규호	정주현	김기열	김진영	박전희	심규대	이경수	이준호	정은희	최종악	강명수
김순이	신민희	이지연	강성훈	정차섭	김기은	김진옥	박전희	심형모	이경호	이종재	정인우	최춘봉	강상곤
김양수	신상문	이지은	강용원	제윤경	김기태	김진창	박정하	안병운	이광석	이진관	정일구	최현희	강석
김연호	신소봉	이철규	고용국	조현혁	김길홍	김창균	박정화	안봉섭	이광윤	이진혁	정춘화	하명수	강석철
김영선	신승한	이태환	공성식	천상국	김대측	김창수	박중구	안신실	이광재	이찬우	조경국	하정순	강옥엽
김영학	신영희	이항란	권인홍	최경자	김두환	김춘자	박중오	안재영	이광호	이창규	조계만	하태길	강정호
김영환	신정원	임다정	권진구	한병세	김미혜	김태진	박중옥	안정민	이기훈	이창수	조길문	하현홍	강태경
김은미	신희정	임승기	김광수	한해광	김병기	김학경	박준모	안창호	이길수	이창수	조남של	한덕이	고덕봉
김은숙	심민규	임정지	김동식	홍신아	김병수	김학재	박창근	안철한	이길윤	이천수	조병돈	한덕이	고성일
김주남	심재식	임진택	김동채	홍춘식	김상실	김학훈	박창근	양정분	이대현	이춘석	조생남	한돈집	고재성
김주원	안경모	장영달	김명주	김선우	김현미	김창렬	양희진	이명신	이명신	이충환	조용월	한만준	고정규
김지연	안은경	전승희	김미순	이천여주	김선일	김현숙	박태문	엄기홍	이미희	이현표	조은미	한순택	공규현
김지영	안영일	전재은	김성춘	경실련	김선희	김형식	박태문	엄태희	이박우	이해철	조장래	한영순	구자길
김창현	안정희	전재현	김숙자	김선희	김호열	박형국	엄희용	이백선	이현숙	이현숙	조정숙	한영옥	권경자
김한일	안태희	전종덕	김영표	강경모	김성국	김홍태	박홍재	여재혁	이복수	이현숙	조종성	한은상	권남구
김햇님	여현정	정동규	김점자	강석림	김성국	남기태	배경희	여한수	이부경	이현호	조철현	한은상	권대현
김현진	염충	정연준	김정선	강신욱	김성길	남용대	배정수	오근철	이상년	이현희	조춘순	한정민	권미정
김호수	오경아	정영수	김중구	강영애	김성완	노필원	배중열	오명환	이상원	이호돌	조택선	한정현	권오경
김후승	오성탁	정우영	김주환	강정순	김성재	류시근	변영구	오병재	이상태	이호영	조택선	한준학	권오연
나진석	유기용	정하성	김평호	강창영	김세동	마상호	변정해	오석호	이상혁	이호일	조한영	한준호	권옥환
남화선	유남숙	정혜경	김현태	고경애	김수동	마석홍	변정해	오성순	이석환	이훈	조취명	한준희	권정호
노국환	유상진	조경숙	김희선	고윤지	김숙현	마석홍	부태길	오성용	이선	임명원	주상운	한희자	권혁철
류호웅	유선영	조삼현	박병규	고인정	김순업	마세진	빈종진	오형선	이선정	임상열	주상운	함연자	김갑룡
박기두	유영표	조재국	박복숙	공미선	김순업	마애진	빈종진	우근배	이성훈	임상열	지소연	함연자	김진수

김경태	김은영	박시우	안재균	이원구	정재영	함창학		임성진	고미선	송석연	강희두	양승조	한형규
김경호	김용철	박옥희	안희섭	이윤성	정재윤	허도병	전주경실련	장석재	고병기	송순	고영술	오수균	허종일
김계원	김인수	박용해	양광범	이은복	정지은	허우범		전기환	고봉수	송승호	구자형	오승화	홍영식
김관호	김자영	박윤수	양의만	이의재	정진오	허중식	강원균	정세윤	고상봉	신용현	금명기	오인철	황규훈
김광업	김재식	박재윤	양희석	이일희	정창훈	허주형	강유정	정태원	고석건	안영철	김경은	유영길	황종헌
김광호	김재영	박준용	엄연주	이재학	정철	허창희	강창수	조선환	고성봉	양문석	김길년	유영진	황천순
김근영	김종길	박진석	여승철	이정림	정화석	홍기석	강현민	조영범	고영수	양백윤	김문수	유진영	내일시스템(주)
김남돈	김종욱	박찬화	오경환	이정윤	정화윤	홍옥표	강호수	조찬완	고영식	양복심	김미경	윤권중	
김대중	김중호	박한정	오광민	이중우	조광희	홍인성	곽이구	주재호	고정훈	양봉석	김미수	윤정섭	청주경실련
김도영	김종화	박현숙	오세광	이종일	조금숙	홍인식	국승철	진정현	고태식	양시경	김봉미	윤일규	
김도현	김준우	박형수	오월명	이주영	조동암	황규철	권미경	채주석	김경용	양우선	김상관	이경주	강민오
김동우	김진영	박형중	오원선	이주용	조영희	황덕성	김만식	천상덕	김남혁	양호진	김상철	이계환	강병용
김동호	김진희	박혜숙	유동현	이준한	조용철	황석광	김병석	최낙용	김동욱	오승용	김세곤	이명근	강병호
김두영	김창선	박흥열	유승분	이지영	조용화	황수연	김수환	최동성	김동전	오영익	김영호	이병덕	강석형
김달숙	김창우	방수환	유준호	이지준	조현경	황용선	김용권	최문희	김명준	오정훈	김용진	이상일	강성래
김영석	김태호	배성수	유진성	이찬우	조현준	황제우	김용휘	최요일	김봉석	오중선	김재원	이상춘	강승구
김영제	김태훈	배승휘	유홍성	이창훈	주춘식	(사)공정무역연대협	김장기	최정일	김봉철	유덕현	김중우	이상호	강은희
김우룡	김하은	배철현	윤관옥	이철준	지건태	(주)거룡	김중원	최진희	김봉희	유두석	김진태	이서영	강진성
김미경	김학무	백동수	윤대기	이중우	지석	(주)경인방송	김주희	한병규	김선호	이성호	김철수	이선열	강현구
김미영	김현식	백민섭	윤동구	이한용	지용택	(주)동우로즈	김형식	한상호	김성수	임숙자	김태명	이수현	강호문
김병우	김효정	백완근	윤명철	이현경	진혁화	(주)디씨일미	라형연	홍순필	김성준	임정현	김태호	이순근	강호승
김병철	김희연	변성준	윤미선	이현준	차경열	(주)서부티엔디	박규만	황병해	김세검	장성욱	김병조	이승열	경준용
김봉수	나영우	변태수	윤지의	이형구	차광윤	(주)선광	박영수		김수연	장원석	김혜영	이원자	고상돈
김상길	나종팔	서경옥	윤천준	이형수	차동열	(주)영진공사	박영진	정읍경실련	김승필	장정훈	김홍철	이점순	고영구
김상철	나종훈	서부길	윤호	이후삼	차득기	(주)인천일보	박복희		김신숙	정상철	김효실	이종필	곽규은
김상열	남봉현	서용성	유희정	임병구	최경훈	(주)경이엔지-최홍욱	박상민	강창조	김신순	조문수	나이란	이종호	곽나현
김선홍	남세종	서재승	윤희택	임승관	최광용	(주)한성리안	박효민	김용철	김양보	조시중	노덕우	이철호	곽덕신
김설	남지승	서주원	이경우	임준택	최광은	(주)인천서유회(주)	성치원	김을수	김영남	채호진	노순식	임승안	곽승호
김성근	남창섭	서태원	이귀복	임재훈	최규재	길의로재단	송약용	김택술	김영희	한남석	류민상	정기수	구남휘
김성수	남홍우	서해안	이기태	임한택	최금행	(주)한빛엔터테인먼트	안수현	김현	김우준	한용환	류지현	정순이	구병희
김성태	노국진	성기건	이길성	임현준	최두영	도영운수(주)	안정훈	박래수	김원규	허정아	맹창호	장원철	구안서
김수자	노승환	성덕규	이다빈	임희숙	최병길	물류청교회	양창훈	박영민	김익태	현경호	명진아	장재식	권경미
김승남	도지성	성용원	이도희	임희진	최상희	(주)한빛엔터테인먼트	엄상섭	송민수	김인영	현계담	박미경	전오진	권기승
김시철	류병희	손병옥	이동기	장일진	최신애	(주)대우증권(주)한빛엔터테인먼트	오상현	유사현	김정수	현미영	박민숙	전중환	권미경
김연옥	류재홍	손장원	이루다	장정민	최성원	시사인천	유창엽	이광호	김중훈	현중철	박민자	정구봉	권성안
김연옥	명선목	송경희	이리라	장조영	최성진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윤영수	이상길	김진심	현창석	박복연	정미영	권수복
김영구	명창준	송문성	이린우	전동춘	최인용	에스지(주)	윤태영	이상실	김창기	홍기홍	박상면	정병인	권영기
김영국	목동훈	송원덕	이문의	전무수	최일동	인사800	은영주		김창연	홍서희	박수석	정성진	권오건
김영수	문상범	송인선	이범열	전성식	최재혁	인성개발(주)	은용우	제주경실련	김칠수	홍성화	박종갑	정진선	권오은
김영옥	민근홍	송태영	이병기	전영진	최정자	인천경영자총협회	이민호		김형근	황경수	박태서	정치화	권태성
김영준	박경호	신나영	이병철	전용성	최정철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이보향	강경희	김형수	황병철	박헌희	정하진	김갑용
김옥산	박명희	신병철	이상동	전준권	최준혁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이선미	강봉석	문건식		백우현	조영주	김갑일
김유구	박민서	신윤희	이상영	정기호	최찬용	인천상공회의소	이승현	강영준	박미현	천안아산	복아영	조하심	김진도
김유미	박상찬	신은철	이상훈	정낙식	최현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이영식	강예담	박승훈	경실련	소소영	주진혁	김진일
김유민	박상희	신종환	이성환	정두용	최혜자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장춘	강인창	박재원		송홍석	최경식	김경애
김유경	박석민	심연섭	이애경	정미경	하석용	인천경제복지재단	이재윤	강정일	변성연	강민숙	신대식	최경영	김경자
김원화	박선홍	심정순	이연숙	정석환	한기남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이점수	강지용	변정철	강용봉	신동현	최석남	김경자
김윤식	박성인	심현창	이영권	정선오	한만송	인하대학교총동창회	이정	강창균	변중욱	강은선	신영철	최장운	김경중
김윤태	박수영	안동찬	이용우	정승연	함문숙	(주)한빛엔터테인먼트(주)	이현희	강태운	부상원	강인영	안주형	하종률	김경호
김은경	박소옥	안병준	이용준	정연중	함지현	한국노총인천지부	임규삼	고광희	부윤삼	강태윤	안경모	한문식	김계욱



김관식	김승호	김준태	류덕환	박재익	손세원	안윤숙	유광선	이귀형	이일만	임미애	정순배	지동규	함창모
김광남	김애영	김지연	류연옥	박종관	손윤희	안정현	유광식	이규선	이일우	임병락	정영경	지유석	허석필
김광복	김양식	김진철	류용걸	박종국	손정훈	안종태	유국열	이기정	이장희	임성진	정영래	진중현	허성만
김광성	김연식	김진호	류우열	박종홍	손호진	안창만	유근수	이길재	이재덕	임성중	정영섭	차은녀	허영
김광직	김영근	김창석	류재욱	박종을	손희준	안태희	유미숙	이길환	이재숙	임소옥	정영희	채희관	현상주
김광희	김영란	김천식	류재형	박종혁	송광희	양계인	유민상	이대응	이재영	임승빈	정우성	최각규	현진
김교선	김영란	김철	류지봉	박지영	송길화	양기정	유민채	이도영	이재영	임용현	정은경	최경호	형미희
김규설	김영민	김춘희	류진호	박진우	송선호	양미선	유선우	이동로	이재원	임은정	정은희	최명섭	홍강희
김규원	김영배	김대성	류찬걸	박철규	송은숙	양승주	유성훈	이동진	이재은	임일수	정인수	최상범	홍성학
김기영	김영식	김대성	류학천	박철석	송의천	양영순	유수영	이두영	이재춘	임재규	정일기	최상영	홍성학
김길후	김영재	김태희	류현숙	박철완	송일근	양원철	유승덕	이만형	이재현	임중승	정일택	최상천	홍승표
김남진	김영태	김평환	마재광	박해순	송재경	양찬섭	유시송	이만희	이정규	임지민	정장영	최상희	홍우표
김대광	김영환	김필제	맹경제	박현순	송재구	엄경출	유영경	이명순	이정석	임차남	정재량	최상희	홍우표
김대웅	김영희	김학민	맹현숙	박홍래	송재섭	연구순	유영아	이명훈	이정아	임한수	정지영	최우식	황락훈
김대환	김완희	김학실	문성오	박희분	송태성	연구용	유응모	이미경	이정협	임현경	정진아	최윤침	황미화
김동수	김용규	김한솔	문종극	박희자	송태화	연방희	유재남	이미순	이중수	임혜숙	정진원	최원호	황신건
김동암	김용덕	김현상	문희창	반영운	송해근	연영규	유재일	이민영	이중실	임희영	정진하	최윤정	황성주
김동욱	김용석	김현주	민경억	반주현	송효현	연영태	유창범	이범석	이중윤	장경석	정찬영	최은실	황중빈
김동일	김용태	김현진	민광기	방현철	송희삼	연인하	유철호	이병관	이중한	장남운	정철	최재국	황희연
김동진	김용학	김형규	민선희	배병기	신경아	연철출	유충욱	이병호	이주봉	장동대	정중선	최재일	(사드블록스) 심인희
김동현	김용규	김형우	민승기	배영환	신국희	염경수	유형열	이복순	이주선	장병순	정태진	최준문	(사이버안)행복부
김동환	김원식	김호숙	민청식	백미경	신규식	염우	유현덕	이상규	이주형	장병희	정희승	최종예	(주)엔지이(주)김민우
김두호	김유호	김호일	박관주	백승협	신동선	염은식	유환철	이상식	이준수	장선배	조경주	최종익	(주)세일
김말숙	김유모	김홍구	박광수	변광섭	신동예	오경숙	육미선	이상정	이준희	장영건	조경주	최준현	(주)엘지화학
김명수	김은옥	김홍성	박금순	변만수	신명섭	오경아	육종길	이상종	이중섭	장재봉	조규완	최진욱	(주)중부컴퍼니
김명자	김용철	김환국	박기환	변만수	신명수	오명진	윤진영	이석구	이중현	장홍래	조규호	최진완	(주)청주방송
김문옥	김인숙	김황래	박남순	변상호	신명숙	오명환	윤관수	이석희	이중훈	장홍원	조동순	최충진	(주)충주제철센터
김미라	김인자	김효일	박문희	변성민	신성길	오미정	윤미정	이선미	이지숙	전광호	조동욱	최태호	공공디자인이즘
김미숙	김일경	김희수	박미애	변은영	신성일	오병건	윤병선	이선순	이지영	전금식	조성구	최현숙	대신강(주)홍재동(주)
김미연	김일복	김희숙	박미영	변의수	신성철	오상록	윤병희	이선우	이찬호	전금희	조성오	최형도	두개비(주)영농조합
김민호	김재복	나재경	박범혁	변장섭	신승주	오석송	윤석위	이수복	이창록	전길자	조수중	최효균	두개비(주)구들
김병우	김재숙	남기상	박석현	변중윤	신언관	오세란	윤승현	이수영	이철중	전년규	조승연	표한홍	디자인케이크
김병의	김재춘	남기현	박성순	변필섭	신영희	오세봉	윤여일	이수한	이철희	전동기	조영화	풍경섭	리드산업개발(주)
김봉주	김재학	남성욱	박성호	봉원진	신영창	오연경	윤정수	이순남	이한례	전병선	조용숙	하옥란	범우법인 주성
김상무	김정문	남성욱	박세복	봉윤근	신용재	오영미	윤진현	이순호	이해승	전용렬	조원주	하재성	시민안전정감대리
김상수	김정웅	남윤빈	박세웅	서건석	신용한	오영애	윤찬열	이승배	이향숙	전용표	조윤행	하태중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선영	김정일	남종순	박연수	서길용	신철영	오영필	윤태한	이승준	이현수	전우석	조은애	한범덕	서울고속(주)
김선희	김정초	네모도 마사썬구	박영미	서미화	신태경	오윤주	윤한식	이애선	이현식	전창해	조을선	한상화	신일전기공업(주)
김성민	김종구	노근호	박영미	서완석	신해운	오재만	윤현우	이연옥	이현주	전희택	조일원	한성원	신흥기업(주)
김성수	김종기	노만균	박영순	서준철	신현규	오종영	윤효영	이영로	이형각	정길재	조정식	한승환	씨투넷(주)
김성식	김종철	노재량	박용연	서효석	신현식	오준영	이가빈	이영숙	이형우	정란희	조종호	한연수	에듀크리인트
김성중	김종철	노진호	박은경	석명용	신희숙	오태경	이건철	이영진	이혜정	정문섭	조진희	한영선	에스케이(주)주최
김성천	김종태	도경민	박익규	선종열	심규석	오태진	이경수	이영희	이호상	정미화	조창영	한원영	우진교통(주)
김성호	김종태	도선봉	박인기	선지연	심상학	오훈영	이경순	이옥규	이화련	정병숙	조창전	한은례	이주인노동안련센터
김성희	김주복	도승기	박인숙	설경철	심수영	오희	이경희	이옥인	이호숙	정상섭	조형규	한인섭	인권연대 슝
김송일	김준경	라윤애	박인자	성기남	심영미	우상동	이광식	이유정	임근철	정상신	조혜경	한정현	주식회사 이엔엑스
김수열	김준년	류규식	박인환	성창기	심재원	우정영	이광용	이윤범	임근수	정상완	주서택	한중섭	주최(주)영농조합
김수정	김준봉	류근모	박재경	성한용	안병대	원광희	이광희	이은숙	임기중	정성희	주재구	함영욱	주식회사 팜릴리아
김수환	김준수	류근윤	박재관	소순창	안영숙	유경훈	이귀숙	이인우	임동현	정수창	주창백	함중철	참사랑병원

청주YMCA	청주여성의회	충북형여성지원단	충천경실련	김석중	박대진	변용환	신혜숙	윤재선	이승준	전규호	정휘돈	함태성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여성개발원		김영준	박도수	변차용	안호춘	윤진현	이원규	전근우	조성모	허영준
청주여성개발원	충북개발공사	충청에너지서비스	고대규	김정현	박동운	석영기	양태식	윤학로	이은영	전동준	조성자	허정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태릉실업주식회사	권용범	김진상	박미현	손현기	윤준형	이관행	이인섭	전만식	진장철	허중영
청주상공회의소	충북민주인문시민연합	한국노총충북본부	김정숙	김찬중	박상규	손홍주	유제원	이복연	이종민	전성휘	최희수	황덕호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시민재단	현대CN 충북방송	김광배	김한택	박형일	송창근	윤장혁	이상섭	이희창	전호성	하삼준	황해숙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여성개발원	협동조합친구들	김남철	남형우	방명열	신선철	윤재경	이석원	임재선	정의성	한희민	충천상공회의소
청주이문소비자생활	충북지역개발회		김대영	박경철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02-741-8566	윤순철	국제팀	02-766-5623	간사: 정호철
기획교육팀	02-766-5626	팀장: 노건형, 간사: 최윤석	부동산국책감시팀	02-3673-2146	팀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간사: 장성현
회원팀	02-766-5627	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이성윤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4	팀장: 권오인
홍보팀	02-766-5628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팀장: 남은경
경제정책팀	02-3673-2143	팀장: 권오인, 간사: 오세형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팀장: 윤철한
정치사법팀	02-3673-2141	팀장: 김삼수, 간사: 서취원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팀장: 윤철한, 간사: 정택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음유정, 김용재
사회정책팀	02-3673-2145	팀장: 최예지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이수희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고영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유영아 간사: 김미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서해림 갈등센터 국장: 김원숙, 부장: 이선경	거제경실련	055-637-9451	간사: 배동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연구소 국장: 도한영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인천경실련	032-423-2950	국장: 윤정선, 부장: 배성훈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성아, 팀장: 정지은	전라·제주권		
경기·강원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고선휘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최진숙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박미영
군포경실련	031-392-3111	부장: 황은아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유병욱, 간사: 문은정	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최수진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충준, 간사: 황규숙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신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운, 간사: 변정해			
양평경실련	031-772-7199	국장: 여현정, 간사: 김은미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충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